

기10.111
통1117
2000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 지침서

2001. 4



335160



차 례

I. 조사개요	5
1. 조사연혁	7
2. 조사목적	7
3. 법적근거	7
4. 조사주기	7
5. 조사대상	7
6. 조사기간	9
7. 조사방법	9
8. 조사항목	10
9. 조사인력 및 조사체계	10
10. 조사준비	11
11. 실사 및 실사지도	12
12. 추진일정	14
13. 조사결과의 활용	15
II. 조사원 유의사항	17
1.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19
2. 가구방문시 유의사항	19
3. 가구방문 및 조사요령	20

Ⅲ. 조사표 작성요령	21
1. 일반적인 사항	23
2. 조사표 표지	23
3. 가구원 사항	25
4. 주거에 관한 사항	31
5. 지출에 관한 사항	33
6. 가구내구재에 관한 사항	41
7. 저축 및 부채에 관한 사항	45
8. 부동산에 관한 사항	54
9. 소득에 관한 사항	61
10. 소득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97
Ⅳ. 조사표 내용검토 요령	99
1. 일반적인 사항	101
2. 가구조사표	101
3. 개인별조사표	105
Ⅴ. 조사표제출	109
1. 조사표 및 가구명부 편철용 표지 작성	111
2. 조사표 및 가구명부 편철 요령	111
3. 조사표제출	112

VI. 부록	113
1. 조사표	115
2. 소비지출항목분류표	134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36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	159
5. 답례품 지급명부	166
6.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 조사표 작성현황표	168
7. 2000학년도 각급학교 납입금 징수액 현황(1인당 연액)	170
8. 배기량별 자동차세	172
9.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급여 기준표	174
10. 2000년도 1인당 국가유공자 보상금 월지급액표	175
11.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및 보험료	176
12. 고용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179

1. 조 사 개 요

1. 조사연혁
2. 조사목적
3. 법적근거
4. 조사주기
5. 조사대상
6. 조사기간
7. 조사방법
8. 조사항목
9. 조사인력 및 조사체계
10. 조사준비
11. 실사 및 실사지도
12. 추진일정
13. 조사결과의 활용

I. 조사개요

1. 조사 연혁

- 1991년 10월~12월 : 제 1차 가구소비실태조사 실시
- 1996년 10월~12월 : 제 2차 가구소비실태조사 실시

2. 조사 목적

가구의 소득과 소비, 내구재 및 자산 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 수준 및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법적 근거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 제 10129호

4. 조사 주기

5년

5. 조사 대상

- 표본조사대상가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조사구내 약 29,000 가구로 가구의 소득, 지출 및 자산보유실태 파악이 가능한 가구이다.

— < 2인 이상 가구 중 제외 가구 >

-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겸용주택내의 가구
- 가구원 중에서 영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 동거하는 가구
 - 동거인 중 가사사용인인 가정부, 청소부 등은 2인이상이어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지만, 영업상 사용인인 점원이나 면도사 등은 2인이상이면 조사하지 않는다.
- 혈연관계가 없는 직장동료나 선후배 또는 친구들이 모여서 자취하는 가구
 - 그러나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취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 외국인 가구
가구주가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귀화한 가구는 조사대상이 된다.

< 1인가구 중 제외 가구 >

-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시설에 있는 사람
-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겸용주택내의 가구
- 외국인 가구

6. 조사 기간

가. 보조조사(주간별 지출조사)

2001년 4월 1일 ~ 4월 28일

나. 본조사 : 2001년 5월 7일 ~ 5월 18일(12일간)

조사항목	조사대상기간
○ 가구원 및 주거에 관한 사항	2000년 12월말 현재
○ 지출	2000년 1월 1일 ~ 12월 31일
○ 가구내구재	2000년 12월말 현재
○ 저축 및 부채	2000년 12월말 현재
○ 부동산	2000년 12월말 현재
○ 소득	2000년 1월 1일 ~ 12월 31일

7. 조사 방법

가구원 및 주거에 관한 사항, 지출, 가구내구재, 저축·부채 및 부동산 관련 항목 등은 가구대표자 또는 조사내용을 잘 응답할 수 있는 가구원에게 질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소득관련 항목은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에게 각각 질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 기입식 방법을 병행한다.

8. 조사 항목

- 가구원 및 주거 등 가구의 일반사항(4개 항목)
총가구원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사항, 거쳐구분, 주거전용면적
- 지출관련 항목(5개 항목)
소비지출, 타 가구 송금보조, 조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기타세금), 지급이자, 소득세·연금기여금·사회보험료(개인별 조사표 항목)
- 가구내구재(1개 항목)
주요 가구내구재 보유수량 및 연도별 구입수량
- 저축 및 부채관련 항목(2개 항목)
저축항목별 적립/불입/투자금 총액, 차입방법별 부채
- 부동산관련 항목(3개 항목)
입주형태별 부동산 평가액, 현 거주 주택이외의 부동산소유여부 및 평가액, 임대보증금여부 및 금액
- 소득관련 항목(27개 항목)
근로 및 사업소득(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9. 조사인력 및 조사체계

- 조사인력 : 경제활동인구조사 담당 정규직원 약 520명, 임시조사원 약 720명
- 임시조사원
 - 채용기관 : 각 지방통계사무소
 - 채용인원 : 약 720명

- 채용기간
 - 교육 : 4.16~4.21, 5.2~5.4 중 1일간
 - 실사 : 5.7~5.18(12일간)
 - 내검 : 5.19~5.20(2일간)
- 지도담당자

경제활동인구조사 담당 정규직원 약 520명
- 조사체계

통계청 ⇒ 지방통계사무(출장)소 ⇒ 경제활동인구조사 담당직원 및
임시조사원 ⇒ 조사대상가구

10. 조사준비

가. 가구명부 보완

- 기 배부된 가구명부를 경제활동인구조사 담당직원이 기간 중(3.26~3.31)에 보완하고 부적격가구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기입한다.
- 1차 보완된 가구명부는 각 사무(출장)소별로 채용된 임시조사원에게 담당조사구의 가구명부를 배부한다.
- 정규직원 및 임시조사원은 실사기간동안 담당조사구의 가구변동사항을 가구명부에 수정보완하고 조사가 완료된 후 1부는 조사표류와 함께 사회통계과에 제출한다.

나. 보조조사표(주간별 지출조사) 정리(4.2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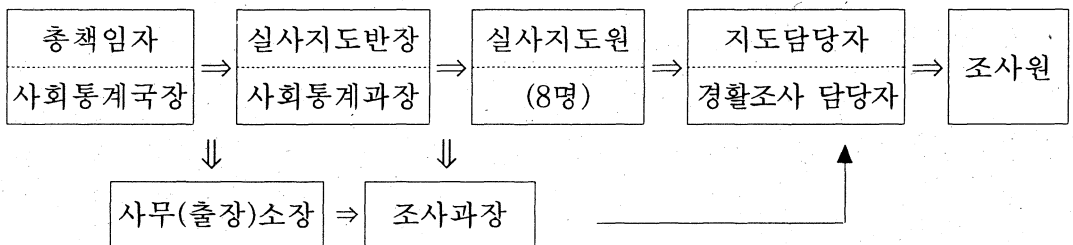
- 4.1~4.28 기간중에 작성된 보조조사표(주간별 지출조사)를 회수하여 각 비목별 연간지출금액을 환산한다.
- 정리된 보조조사표는 조사구별로 배정된 임시조사원에게 배부한다.

11. 실사 및 실사지도

가. 실사 및 내검 기간

- 실사기간 : 2001. 5. 7 ~ 5. 18(12일간)
- 내검기간 : 2001. 5.19~5.20(2일간)

나. 실사지도 체계



다. 실사지도 요령

- 총책임자
 - 조사관련업무 총지휘
 - 조사업무 제반사항 점검 및 순회지도
- 실사지도반장
 - 실사지도 업무총괄
 - 조사내용 및 지출비목분류 등 조사전반에 관한 지침시달
 - 조사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 조사업무 진척도 파악

○ 중앙 실사지도원

- 현장지도 총괄
- 조사표 내검 지도
- 회수된 조사표의 완성도 파악
- 임시조사원 및 지도담당자의 일일활동상황 점검
- 조사사항 질의응답
- 기타 조사관련 서류 및 행정사항 확인 점검

○ 지방사무(출장)소 경제활동인구조사 담당직원

<보조조사표 배부 및 기입지도>

- 4월 첫주에 보조조사표를 배부하여 4.1~4.28일에 걸쳐 4주간의 주간가계부를 작성토록 기입지도 및 회수

<임시조사원 지원>

- 조사구 안내 및 조사가구 설득, 임시조사원의 업무수행 지원
- 임시조사원 담당조사구의 가구명부 작성

<본인 담당 업무>

- 대상가구 설득 및 협조가구에 답례품 지급, 답례품지급명부에 서명 받음
- 면접조사 실시
- 부재가구는 전화로 재방문 예약일자를 받음
- 조사표 회수현황 파악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 내검·보완

○ 임시조사원

- 조사표류, 가구명부, 답례품 및 조사용품 수령
- 대상가구 설득 및 협조가구에 답례품 지급, 답례품지급명부에 서명 받음
- 면접조사 실시
- 부재가구는 전화로 재방문 예약일자를 받음
- 조사표 회수현황 파악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 내검·보완

라. 내용검토(사무소 추진상황에 따라 일수는 변경 가능)

○ 산업 및 직업 부호기입

- 5.19~5.20(2일간)까지 부호기입을 완료함

○ 내검 및 자료보완

- 조사내용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현지 내검 강화
- 사무소별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담당직원 및 임시조사원이 조사표 내검 및 자료보완(5.20일까지)

12. 추진 일정

- 임시조사원 모집 : 4.2~4.12
- 조사담당자 교육 : 4.16~4.21, 5.2~5.4
- 실사 : 5.7~5.18(12일간)
- 내검 : 5.19~5.20(2일간)
- 조사표제출 : 5.23~5.25
- 자료처리(외주입력) : 5.28~7.31
- 전산 내검 및 질의조회 : 7월~9월
- 결과분석 : 9월~11월

- 결과공표 : 12월
- 보고서 발간 : 2002년 3월

13. 조사결과의 활용

통 계 청	· 지역소득(GRP) 추계자료 · 도시가계조사의 검증 · 농가 및 비농가의 생활수준 비교
재정경제부	· 국민생활수준 측정 · 재정투자효과 측정 · 소득 재분배 효과 측정 · 각종 세율의 산정 · 소득공제나 각종 세액공제의 산정
보건복지부	· 생활보호 기준의 산정 · 사회보장제도 검토 자료 · 의료보험수가 등 각종 후생관계 요금 산정
노 동 부	· 근로자 가계수지 분석 · 최저임금 산정자료 · 노동관계 정책의 기초자료
행정자치부	· 급여기준의 개정 · 각종 수당산정의 기초자료
시 · 도	· 시·도민 소득 및 소비수준 측정 · 재개발, 토지수용시의 주민이주 보상비 산정
한 국 은 행	· 국민소득(GNP) 계산 · 산업연관 분석의 기초자료
민 간 회 사	· 노사간 임금협상 자료 · 지역별, 계층별 등의 소비실태 분석
법 원	·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자료

II. 조사원 유의사항

1.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2. 가구방문시 유의사항
3. 가구방문 및 조사요령

II. 조사원 유의사항

조사담당자의 성실한 조사업무 수행은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1.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조사기간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 조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도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제23조)에 의하여 처벌(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이 수록된 조사지침서를 미리 숙지하고 조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2. 가구방문시 유의사항

- 가구를 방문하기에 앞서 지참해야 할 용품이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 조사표, 조사구역도, 조사지침서, 가구명부, 필기도구, 조사원증 등
- 조사원증은 반드시 패용해야 한다.
-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바른 언행으로 가구에서 거부감이 없도록 한다.
-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은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가구에 양해를 구한 후 방문하여 조사한다.
- 가구와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가구를 재방문 해야 하는 경우
 - 가구원의 출타, 부재 등으로 적합한 응답자가 없는 경우
 - 조사항목 누락 또는 잘못 조사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3. 가구방문 및 조사요령

< 가구방문 요령 >

- 가구를 방문하면 먼저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밝힌다.
- 적합한 응답자(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조사목적을 설명한다.
- 조사대상가구에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조사목적과 조사된 자료가 추후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응답자가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조사대상가구에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에는 언쟁을 하거나 다투지 말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의 지도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방문한 가구가 가구명부에 기입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변동이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정정한 후 본 조사에 임한다.

< 조사요령 >

- 가구의 일반사항, 지출, 저축 및 부채, 가구내구재, 부동산과 관련된 항목들은 대상가구의 가구원 중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원을 잘 선정하여 조사한다.
- 소득관련 항목은 가구내 만 15세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산업, 직업의 부호는 지도담당자의 지도에 따라 기입한다.
- 직접 면접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조사표를 배부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 회수 날짜를 대상가구와 약속하고 약속한 날짜에 꼭 회수하도록 한다.

Ⅲ. 조사표 작성요령

1.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표 표지
3. 가구원 사항
4. 주거에 관한 사항
5. 지출에 관한 사항
6. 가구내구재에 관한 사항
7. 저축 및 부채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에 관한 사항
9. 소득에 관한 사항
10. 소득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III. 조사표 작성요령

1. 일반적인 사항

- 칼럼란 숫자기입시 끝자리를 맞추고, 칼럼전체가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공백 처리한다.
- 숫자 앞의 공란은 0으로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 조사표 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펜을 사용하도록 한다.
- 조사표 수정시 수정액(화이트)을 사용하게 되면 수정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정사항은 수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적색펜으로 두 줄을 그은 후 내용을 수정한다.
- 조사를 하면서 발생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담당자나 중앙 실사 지도원에게 질의하여 처리한다.

2. 조사표 표지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부수	()사무(출장)소
			총()부중 ()부	지도담당자 ()
				조사담당자 ()

가.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

-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구 관리명부의 번호와 동일하다. 이때 다른 가구의 번호를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가구당 조사표부수

- 소득관련 사항은 만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조사표로 조사되므로 대상가구별 조사표매수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다.
- 개인별 조사표를 포함하여 가구에서 작성된 조사표 부수를 기입한다.
 - 가구용조사표에는 총()부중 (1)부로 기입하고 개인별 조사표에는 총 ()부중 (2)부, 총 ()부중 (3)부, 총 ()부중 (...)부로 기입한다.

【기입예시】

만 15세이상 가구원이 2명인 김동이네 집에서 가구용조사표 1부와 개인용 조사표 1부가 조사되었을 경우

- 가구용 조사표표지 : 총 (2)부중 (1)부
- 개인용 조사표표지 : 총 (2)부중 (2)부

다. 사무(출장)소명 및 지도·조사담당자명

- 사무(출장)소명을 한글로 기입한다.
- 지도담당자, 조사담당자 성명을 한글로 기입한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담당직원이 조사한 조사구에 대해서는 지도담당자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기입예시】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당 조사표부수	(서울)사무(출장)소
1 1 0 0 1	0 1 0 2	0 1 0 1	총 ()부중 (1)부	지도담당자 (별년이)
				조사담당자 (꽃년이)

3. 가구원사항

 2000년 12월 31일 현재 댁에 같이 살았던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합계	남자	여자

-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2000년 12월 31일) 현재 조사 대상가구에 상주했던 가구원수를 기입한다. 가구원에는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생활(취사·취침)을 함께한 경우에는 포함한다.
- 준비된 가구명부를 확인하여 2000년 12월말 현재 가구원이 6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조사한 후 해당 면에 편철한다.

<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

- 외국인, 현역군인(단, 영외거주군인은 가구원에 포함),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취업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국내)이나 해외에 상주하는 가족,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요양소·기도원에 수용된 자 등은 대상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구원에 포함되는 자 >

- 선박승무원, 항공기탑승원, 병원에 입원 중인 자, **영외거주 직업군인, 집에서 출퇴근하는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친척방문·출장·사업상 여행중인 출타자 등

※ **가구원 번호** :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구관리명부상의 가구원번호

- 결과 분석시 개인조사표에서 조사된 사항과 가구원의 인적사항을 연관하여 분석하거나 추후 다른 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잘못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가구원 성명

- 가구원의 성명을 기입한다.
- 가구원 성명은 가구주부터 작성하되,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작성한다.

1-2 가구주와 관계

가구주의 개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하다.

※ **가구주란?**

- 가구주는 한 가구내에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 책임자를 말한다.
-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 중에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만일 호주나 세대주가 전혀 소득이 없이 단순히 타 가구원의 소득을 수령 지출하는 경우 가구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 ① 가구주
- ② 배우자
- ③ 자녀
- ④ 자녀의 배우자
- ⑤ 손자녀 및 그 배우자
- ⑥ 부모(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 ⑦ 조부모
- ⑧ 미혼형제·자매
- ⑨ 기타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가구주와 관계부호와 일치되지 않으므로
기입시 유의한다.

	<u>가구소비실태조사</u>	<u>경제활동인구조사</u>
③	자녀	미혼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기혼자녀

1-3 성별

- 해당 성별에 ○표시한다
- 확인 없이 이름만으로 성별을 속단하여 조사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4 출생년도

- 주민등록이나 호적에 등재된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 태어난 연도를
조사한다.

1-5 교육정도

- 학교구분과 수학여부를 조사한 후 해당 번호를 각각 기입한다.

【기입예시】

-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 3 1
- 전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경우 : 0 0

○ 학교구분

- 학력은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재학, 휴학, 중퇴인 사람에게 해당되며, 기능 훈련, 학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전혀 학교에 다닌 것이 없는 사람은 『00.안받았음(미취학포함)』에 표시한다.
- 공민학교는 초등학교과정과 중학교과정으로 구분되는데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에 해당된다.
- 초급대학, 전문대학, 국제전문학교 2년제, 보건대학·간호대학(3년제) 등은 대학(4년제미만)에 분류한다.

○ 수학여부

졸업(수료 포함), 재학, 중퇴 등 해당사항에 기입하며, 군입대 및 해외 연수, 건강문제 등으로 휴학한 사람은 『4.휴학』에 표시한다.

1-6 혼인상태

- 2000년 12월 31일 기준 만 15세이상 가구원만 조사한다.

○ 호적,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조사한다.

1. 미혼

한번도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2. 배우자 있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3. 사별

과거에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독신으로 있는 사람이 해당되며 배우자의 사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장기간 실종된 상태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특히 광복전 (1945. 8.15) 또는 한국전쟁 당시 배우자가 납치 또는 실종된 사람은 사망으로 간주한다.

4. 이혼

혼인을 했던 사람이 혼인관계가 해제되어 독신으로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도 여기에 포함된다.

1-7 결혼년도

- 분항6에서 「2.배우자 있음」으로 조사된 가구원만 조사한다.
- 결혼한 연도를 조사하여 2자리로 기입한다.

【기입예시】

- 1934년에 결혼한 경우 :

3	4
---	---
- 2000년에 결혼한 경우 :

0	0
---	---

2 작년 1년(2000.1.1~12.31) 동안 3개월이상 같이 살고 있지 않았던
가구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가구주와의 관계	배우자	자녀
사유		
취업	명	명
학업	명	명
기타(군입대 등)	명	명

- 이 항목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구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유무를 파악함으로서 가구의 소득 및 지출항목 조사시 이전소득, 교육비
송금, 생활비보조금 송금 등을 누락 없이 조사하기 위함이다.
- 작년 1년 동안 3개월이상 같이 살고 있지 않았던 가구의 배우자나
미혼자녀유무를 조사한다.
 - 연속된 3개월이 아니더라도 3개월 이상 같이 살고 있지 않았던 경우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 가구의 배우자나 미혼자녀 중에서 함께 숙식을 하지 않고 있지만
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사대상가구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으로 예를 들면 타지에서 학업 중인 자녀 등이 포함된다.
- 문항 1에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으로 조사된 자도 문항 2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조사시 유의한다.
-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주된 사유별(취업, 학업, 기타)로 배우자, 자녀로
구분하여 인원수를 기입한다.

1) 취업

- 직장일로 가족들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 외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을 때
- 외국이나 객지에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하여 돈을 벌고 있을 때에 해당된다.

2) 학업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가서 **조사대상가구의 부담**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 단, 직장에서 경비를 대주며 외국에 파견하여 석사나 박사과정을 다니게 하거나 연수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의 월급은 조사대상가구에서 받을 때는 「취업」의 사유에 해당된다.

3) 기타(군입대 등)

앞에서 설명한 두가지 이외의 사유로 가구주의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4. 주거에 관한 사항

3 이 맥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 및 다세대
- ④ 기타(영업용 건물내 주택, 오피스텔 등)

○ 2000년 12월 31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를 조사한다.

1. 단독주택

통상 한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소유주가 1명인 다가구주택도 포함한다.

2. 아파트

한 건물내에 다수의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이상의 건물을 말한다.

3. 연립 및 다세대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과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한다.

4. 기타(영업용건물내 주택, 오피스텔 등)

살림을 목적으로 건축하지 않은 건물(식당, 수퍼, 상점 등)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건물, 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를 말한다.

4	이 주택의 연건평(전용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평, m ²
·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 아파트의 경우 평형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평 또는 m²로 조사한다.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는 분양면적에서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조사한다.
- 주거와 영업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영업용부분을 제외하고 주거부분의 면적만 조사한다.
- 해당가구가 주인가구인 경우에는 집 전체의 연면적에서 임대해 준 부분은 제외한 면적으로 조사하고, 전세나 월세 등으로 세 들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의 면적을 조사한다.

5. 지출에 관한 사항

1) 소비지출

5

 작년 1년 동안 귀댁의 생활비 중 다음 항목의 지출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항목	연간 지출금액		항목	연간 지출금액
①	식료품비	□□□□만원	⑥	교육비	□□□□만원
②	주거 및 광열수도비	□□□□만원	⑥-1	보충교육비(사교육비)	□□□□만원
③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만원	⑦	교양오락비	□□□□만원
④	피복 및 신발비	□□□□만원	⑧	교통통신비	□□□□만원
⑤	보건의료비	□□□□만원	⑨	기타소비지출	□□□□만원

- 작년 1년 동안의 가구의 생활비 중 식료품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보충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의 연간지출금액을 조사한다.
- 비목별로 작년 1년 동안의 지출금액을 조사할 때는 그 해당항목들을 먼저 설명한 후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 가구에서 응답하는 지출금액에는 현물형태로 가구에 들어와서 소비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보조기입란의 현물항목**을 조사하여 해당 비목의 지출금액에 포함시켜 준다.

※ **현물항목이란?**

- 근로자가 근무처에서 받아야 할 임금을 현금 대신 물건으로 받은 경우 또는 식사제공을 받은 경우
 - 부모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쌀, 채소 등을 받은 경우
 - 임대료 명목으로 물건을 받은 경우
 - 가구에서 생산한 물건(자가생산품)을 가계용으로 소비한 경우
 - 가구에서 파는 물건(자가매물)을 가계용으로 소비한 경우
- 등으로 무료로 제공받아 소비한 항목을 말한다.

- 4월 1일부터 4월 28까지 주간별 지출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는 대상가구의 작년 연간 소비지출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 항목을 조사 한다.
 - 4주간의 비목별 소비지출 금액만으로 작년 1년 동안의 연간지출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주거 및 광열수도비의 경우는 계절별로 지출금액이 다르고, 교육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등과 같은 경우도 자녀의 취학상태가 바뀌거나, 환자가 있었다거나, 자동차의 유무, 통신기기의 유무에 따라 그 지출금액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의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주간별 지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를 조사할 때는 보조기입란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 광열수도비는 계절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유의하여 조사한다.
 - 교육비 항목을 조사할 때에는 대상가구에 작년 1년 동안 취학 자녀 또는 학업 중인 가구원이 몇 명이었는지 먼저 질문한 후 그 가구원들이 작년 1년 동안 학업을 하는데 지출된 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사교육비), 문방구비 등을 누락 없이 조사한다.
- (부록7. 2000학년도 각급학교 납입금 징수액 현황(1인당 연액) 참조)

- 교육비 중 **자녀들의 보충교육(사교육비)**을 위해 지출한 개인과외비, 미술, 피아노, 수학, 영어 등의 학원과외비, 학습지 방문지도비, 학교 보충수업비, 방과후 특별활동비 등은 **보충교육비항목(⑥-1)**에 연간금액을 기입한다.
-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서 학업 중인 가족에게 지출된 납입금, 자취비, 기숙사비 등의 교육관련 지출은 교육비항목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지출금액은 문항 **6**(송금 및 보조)에서 조사한다.
- 교통통신비를 조사할 때는 대상가구의 자가용 승용차, 이동전화, PC 통신 및 인터넷이용여부 등을 참고하여 이와 관련한 작년 1년 동안의 지출금액을 조사한다
- 도시가계조사 가계부 제출가구(2000.1~12월중)는 기 배부된 작년 1년 동안의 소비지출금액을 참고하여 이 항목을 조사한다.
(※기 배부된 도시가계조사의 비목별 소비지출금액에는 이미 현물 부분이 각 비목에 포함되어 있음)

① 식료품비

가구원이 가구내외에서 소비하는 식품과 음료 및 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출

- 곡류 및 식빵,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일류,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외식
- 외식비 : 가족외식 뿐만 아니라 가구원들의 집밖에서 식사, 학교급식비도 포함

② 주거 및 광열수도비

주택 및 토지에 관련된 지출, 난방 및 취사용 연료,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한 지출

- 월세,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가정내에서의 난방 및 취사용 연료, 공동주택난방비 등

③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가구구입 및 수리비용, 가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및 서비스비용

- 일반가구(家具), 가정용기기,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 일반가구 : 장롱, 장식장, 화장대, 침대, 응접세트, 책상, 의자, 식탁, 기타 일반가구 등
- 가정용기기 : 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등 가사에 필요한 가정용 내구재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에어컨, 세탁기 등)
- 식기주방용품 : 주방에서 사용되는 주방용 준내구재(대접, 접시, 컵, 쟁반, 냄비, 주전자, 후라이팬 등)
- 가사잡화 및 소모품 : 조명기구, 가정용공구, 세탁청소용구, 전구, 화장지, 세탁비누, 세탁용합성세제, 섬유린스, 부엌용 세제 등
- 가사서비스 : 가사에 관련된 서비스(가사사용인 급료, 보육료, 쓰레기봉투, 기타청소료,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수선료 등)

④ 피복 및 신발비

의복 및 신발과 이에 관련된 부품 및 서비스 구입비

- 의의, 스웨터·셔츠, 내의, 직물·실,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관련 서비스

⑤ 보건의료비

질병의 치료와 예방, 건강 회복을 위한 의약품, 기타보건의료용품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

-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한방 진료 및 입원비, 외래 진료비, 병원입원비, 물리치료비 등)

⑥ 교육비

교육 및 이에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구입비

- 학교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방구비
- 학교납입금 : 학교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학교에 납부하는 제 경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육성회비, 실험실습비, 생활관비 등)
- 교재비 : 각종 교과서 및 참고서
- 보충교육비(사교육비) : 학습의 보충을 위하여 지불한 비용으로 학원 과외비, 개인과외비, 방과후 특별활동비, 학교보충 수업비, 학습지 방문지도비 등

⑦ 교양오락비

교양, 오락, 취미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신문도서, 교양오락용품기구, 교양오락서비스
- 신문도서 : 일간신문, 월간지, 주간지, 도서 등
- 교양오락용품·기구 : TV, 라디오, 오디오, 사진기, 캠코더, VTR, 컴퓨터, 피아노, 운동기구, 레코드음반, 비디오테이프, 완구, 공예용품, 원예용품 등
- 교양오락서비스 : 공연장입장료, 유선방송시청료, 운동경기관람료, 수영장 이용료, 볼링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운동강습료, 교양 오락강습료, 교육적강습료, 단체여행비, 비디오테이프대여료, 숙박비 등

⑧ 교통통신비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정보의 전달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 통신비
- 공공교통비 :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기차, 전철, 국내항공, 국제항공, 자동차임차료, 화물운송료 등

- 개인교통비 : 자동차구입, 오토바이구입, 자전거구입, 연료비, 정비·수리비, 자동차보험료, 주차료, 통행료 등
- 통신비 : 일반전화료(가정용), 이동통신비(핸드폰, 무선호출기 등), 인터넷 및 PC통신이용료, 인터넷망설치비 등

⑨ 기타소비지출

위 각 비목에 분류되지 않은 소비지출

- 담배, 이·미용비, 장신구, 잡비
- 이·미용비 : 이·미용용품(칫솔, 치약, 화장크림, 화장수, 종합이·미용용품세트 등), 이·미용서비스(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 장신구 : 핸드백, 가방, 우산, 손목시계, 금, 귀금속, 장신구수리비 등
- 잡비 : 경조금, 종교관계비, 종교용품, 회비 및 기타교제비, 행정사법수수료, 기타수수료, 관혼상제비 등

2) 송금 및 보조

6	작년 1년 동안 다른 가구를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출하십니까?
·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보내주었던 생활보조금과 <u>다른 지방 또는 다른 나라에서 학업을 했던 가족에게 지출되었던 교육비송금액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u>	
☐ 1 지출하였음 ☐ 2 지출하지 않았음	
6-1	연간 지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억 □□□□만원

- 다른 가구에 송금한 생활보조금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녀 또는 친인척에게 보내주었던 생활보조금과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보내주었던 교육비송금을 포함한다.
- 자녀 또는 친인척 등의 주택마련 또는 자동차구입 등에 보조해 준 경우 추후 되돌려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빌려준 형태일 때는 문항 9(저축)의 ⑩빌려준 돈 항목에서 조사하고, 순수하게 보조해 준 경우(되돌려 받지 않을 경우)는 이 항목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교육비송금이란** 다른 지방 또는 다른 나라에서 학업 중인 자녀에게 작년 1년 동안 송금한 금액으로 학교납입금, 책값, 하숙비, 자취비, 용돈 등을 말한다.
- 단, 교육비송금에 전세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3) 조세(소득세 제외)

7 작년 1년 동안 귀댁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상속세, 주민세 등을 납부하셨습니다가?

☐ 1 납부하였음

☐ 2 납부하지 않았음

7-1 작년 1년 동안 납부액은 얼마였습니까?

	세금의 종류	납부액
①	재산세	연간 □□□□만원
②	종합토지세	연간 □□□□만원
③	자동차세	연간 □□□□만원
④	기타세금(상속세,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연간 □□□□만원

- 작년 1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상속세, 주민세 등 가구에서 납부한 직접세를 조사하는 항목이다.

단, 사업상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개인별조사표에서 조사한다.**

- 기타세금은 주민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소득세를 제외한 직접세를 말한다.
- 가구의 부동산관련 항목, 가구내구재 항목의 자동차 소유여부 응답 결과와 연계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기타세금 >

	과세대상	납기
재산세	매년 5월 1일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매년 6.16 ~ 6.30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전국의 모든 토지 소유자	매년 10.16 ~ 10.31
자동차세 ¹⁾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 제1기분 : 6.16~ 6.30 · 제2기분 : 12.16~12.31

주1) 부록8. 배기량별 자동차세 참고

6. 가구내구재에 관한 사항

8

작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었던 가구내구재에 대해서 수량을 구입년도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품목명	총보유수량	연도별 구입수량			
			97년이전	98년	99년	2000년
① 침대		☐	☐	☐	☐	☐
② 소파		☐	☐	☐	☐	☐
③ 장농		☐	☐	☐	☐	☐
④ 식탁		☐	☐	☐	☐	☐
⑤ 냉장고		☐	☐	☐	☐	☐
⑥ 김치냉장고		☐	☐	☐	☐	☐
⑦ 가스오븐레인지		☐	☐	☐	☐	☐
⑧ 전자레인지		☐	☐	☐	☐	☐
⑨ 식기세척기		☐	☐	☐	☐	☐
⑩ 세탁기		☐	☐	☐	☐	☐
⑪ 의류건조기		☐	☐	☐	☐	☐
⑫ 에어컨		☐	☐	☐	☐	☐
⑬ 온풍기(팬히터)		☐	☐	☐	☐	☐
⑭ 정수기		☐	☐	☐	☐	☐
⑮ 진공청소기		☐	☐	☐	☐	☐
⑯ 칼라TV(30인치 미만)		☐	☐	☐	☐	☐
⑰ 칼라TV(30인치 이상)		☐	☐	☐	☐	☐
⑱ VTR(비디오)		☐	☐	☐	☐	☐
⑲ 오디오		☐	☐	☐	☐	☐
⑳ 비디오카메라(캠코더)		☐	☐	☐	☐	☐
㉑ 피아노		☐	☐	☐	☐	☐
㉒ 휴대용전화기		☐	☐	☐	☐	☐
㉓ 개인용컴퓨터(PC)		☐	☐	☐	☐	☐
㉔ 휴대용컴퓨터(노트북)		☐	☐	☐	☐	☐
㉕ 오토바이		☐	☐	☐	☐	☐
㉖ 골프세트		☐	☐	☐	☐	☐
㉗ 스키세트		☐	☐	☐	☐	☐
㉘ 승용차 경차(800cc이하)		☐	☐	☐	☐	☐
㉙ 승용차 소형(801~1499cc)		☐	☐	☐	☐	☐
㉚ 승용차 중형(1500~1999cc)		☐	☐	☐	☐	☐
㉛ 승용차 대형(2000cc이상)		☐	☐	☐	☐	☐

1) 기본원칙

- 2000년 12월 31일 현재 대상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품목에 한하여 그 수량을 구입년도별로 조사한다.
- 보유 수량에 포함하는 것
 - 가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 다른 가구에 빌려주거나 맡겨두고 있는 것
 - 중고로 구입한 것
 - 타인으로부터 받은 것
- 보유 수량에 포함하지 않는 것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
 - 가계용과 영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나,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 중고품이나 유행이 지난 것으로 향후 사용할 생각이 없는 것
 - 고장이나 파손이 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
 - 해당가구의 것이라도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가족이 다른 곳으로 가지고 나간 것
 - 다른 가구에서 빌린 것
- 혼수용품으로 장차 결혼하여 가지고 갈 품목은 조사하지 않는다.
- 가사 사용인이나 영업상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은 조사하지 않는다.
- 품목별로 총수량을 먼저 조사하고 이를 다시 구입년도별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 총보유수량

총보유수량을 조사한다.

○ 연도별 구입수량

세분된 연도별로 구입수량을 조사한다.

○ 기능이 복합적인 품목의 경우

- 각 기능의 비중이 동일하다면 해당되는 기능에 각각 수량을 기입한다.

【기입예시】

- 냉온풍기 → 에어컨과 온풍기
- 비디오비전 → TV, 비디오

- 주기능과 부속기능으로 나눌수 있는 품목은 주기능 품목에만 수량을 기입한다.

【기입예시】

- 개인용 컴퓨터에 TV수신장치를 설치하여 TV를 시청하는 경우
→ 주기능인 개인용컴퓨터에만 수량을 기입

○ 품목별 설명

- (1) 침대 : 유아용 및 간이 침대는 제외한다.
- (2) 소파 : 소파는 3인이상이 앉을 수 있는 것으로 1인용 3개이상, 3인용 1개이상을 말한다.
- (3) 장농
- (4) 식탁 : 식탁과 식탁용 의자가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 (5) 냉장고 : 아이스박스는 제외한다.
- (6) 김치냉장고
- (7) 가스오븐레인지 : 가스레인지와 오븐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 (8) 전자레인지
- (9) 식기세척기
- (10) 세탁기 : 전기세탁기의 용량에 따른 구분은 하지 않는다. 단, 탈수 기능만 있는 것(예:빨순이)은 제외한다.
- (11) 의류건조기
- (12) 에어컨 : 룸에어컨과 패키지형 에어컨을 포함한다.
- (13) 온풍기(팬히터) : 에어컨과 온풍기의 기능 비중이 동일하다면 해당되는 기능에 각각 수량을 기입한다
- (14) 정수기 : 가격이 20만원 이상이고, 필터가 2개이상 소요되는 것을 말한다. 단, 렌탈정수기는 제외한다.
- (15) 진공청소기 : 10만원 미만의 충전식 청소기는 제외한다.
- (16) 칼라TV(30인치 미만) : 브라운관의 크기가 30인치 미만인 것을 말한다.
- (17) 칼라TV(30인치 이상) : 브라운관의 크기가 30인치 이상인 것을 말한다.
- (18) VTR(비디오)
- (19) 오디오 : 앰프, 튜너, 카세트 테크, CD 플레이어, 이퀄라이저, 스피커, 턴테이블 등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을 선으로 연결하여 오디오시스템을 만든 것(컴포넌트)과 한 개의 케이스에 제작되어 있는 것(뮤직센타)
- (20) 비디오카메라(캠코더) : 비디오 기능과 무비카메라 기능이 복합된 휴대용 무비카메라이다. 주 기능이 무비카메라이므로 비디오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21) 피아노 : 디지털피아노도 포함한다. 단, 완구류는 제외한다.
- (22) 휴대용전화기 : 카폰은 제외한다.
- (23) 개인용 컴퓨터(PC)
- (24) 휴대용 컴퓨터(노트북)
- (25) 오토바이 : 스쿠터도 포함한다.
- (26) 골프세트
- (27) 스키세트

- (28) 승용차 경차(800cc이하) : 배기량이 800cc이하인 것
 (29) 승용차 소형(801~1499cc) : 배기량이 801~1499cc인 것
 (30) 승용차 중형(1500~1999cc) : 배기량이 1500~1999cc인 것
 (31) 승용차 대형(2000cc이상) : 배기량이 2000cc이상인 것

7. 저축 및 부채에 관한 사항

- 가구의 금융자산 상태 즉, 저축보유액과 부채잔액을 파악하여 금융 자산 상태와 소비지출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1) 저축에 관한 사항

9 다음은 저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갯돈불입금에는 작년 12월말 현재 아직 계를 타지 않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 주식, 채권은 작년 12월말 현재 시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축항목	적립/불입/투자금 총액
①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억 □□□□만원
②	적금, 부금(개인연금, 보험제외)	□□억 □□□□만원
③	저축성보험	□□억 □□□□만원
④	목돈예금(원금보장)	□□억 □□□□만원
⑤	목돈예탁(원금보장안됨)	□□억 □□□□만원
⑥	주식	□□억 □□□□만원
⑦	채권	□□억 □□□□만원
⑧	개인연금(저축·신탁·보험)	□□억 □□□□만원
⑨	갯돈 불입금	□□억 □□□□만원
⑩	빌려준 돈	□□억 □□□□만원

가) 기본원칙

- 2000년 12월 31일 현재 대상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금액을 조사한다.
- 조사단위 금액은 만원으로 하며, 만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 동거인이나 영업상사용인의 저축은 조사하지 않는다.
-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의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가구(자녀의 가구)에서 조사한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의 연금기여금과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는 저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개인연금은 저축에 포함한다.
- 가계용과 영업용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계용으로 포함하여 조사한다.
-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저축으로 보지 않는다
(예시) 돼지저금통

나) 조사방법

- 각 저축항목별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적립/불입/투자금 총액을 조사한다.
- 저축항목별로 2개이상의 계좌가 있을 경우 보조기입란을 이용하여 월/분기별 저축(보험료)금액, 총 납입월수 등을 질문하여 적립/불입/투자금 총액을 조사한다.

①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 예금주가 원할 때 언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당좌예금, 보통예금, 가계종합예금 등이 있다.
-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예금통장, 당좌예금통장 등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잔고를 조사한다.

② 적금, 부금(개인연금, 보험 제외)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는 적립식 저축으로 은행의 정기적금, 상호·주택부금 등을 말한다.
- 2000년 12월 31일 현재 불입한 총 금액을 조사한다.

③ 저축성보험

-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 등을 대비해 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이다.
- 생명보험상품 중에서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해 주는 만기 환급형 보험이나 생명보험 고유의 위험보장 기능 보다는 만기생존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상품은 저축성보험에 포함한다.
- 재해보장보험, 암보험, 성인병 보장보험, 건강생활보험 등과 같이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치료, 유족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장성보험 중에서 만기때 지급되는 급부금이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 단, 만기때 지급되는 급부금이 없거나, 불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 개인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 항목에 포함하지 말고 ⑧개인연금 항목에 그 금액을 조사한다.

④ 목돈예금(원금보장)

- 목돈을 운용하기 위한 예금 또는 신탁상품으로 만기 때 원금손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목돈예탁(원금보장안됨)

- 목돈을 운영하기 위한 상품 중 뮤추얼펀드 또는 단위금전신탁 등과 같이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⑥ 주식

- 2000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에 대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시가총액을 조사한다.
-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액면가로 조사한다.

⑦ 채권

- 2000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던 채권에 대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시가총액을 조사한다.
- 상장되지 않은 채권은 액면가로 조사한다.

- 채권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발행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 발생하는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구분된다.

⑧ 개인연금(저축·신탁·보험)

-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보험을 말한다.
- 2000년 12월 31일 현재 적립/불입된 총 금액을 조사한다.

⑨ 갯돈 불입금

- 「갯돈 불입금」 항목에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아직 타지 않은 계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 작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불입한 갯돈의 총 금액을 조사한다.

⑩ 빌려준 돈

-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타인(개인 및 금융기관외의 법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돈도 포함된다.
- 단, 대상가구의 전세나 월세보증금으로 낸 금액은 빌려준 돈이긴 하지만 문항 11-4, 문항 11-5의 부동산관련 항목에서 조사되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자녀 또는 가족 등의 주택구입비, 전세자금, 자동차구입 등을 보조해 준 경우 되돌려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경우만 포함한다.

2) 부채에 관한 사항

가) 부채보유여부

10	작년 12월말 현재 귀댁에서는 주택마련, 가계생활 또는 기타 용도로 빌려서 아직 갚지 못한 부채가 있었습니까?
☐ 있었음	☐ 없었음

- 2000년 12월 31일 현재 대상가구의 부채보유여부를 조사한다.
- 부채는 원칙적으로 주택마련, 가계생활비 마련 등과 같이 순수한 **가계용 부채**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단,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가구의 경우 가계용과 사업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가계용으로 포함하여 조사한다.
 - 농어가의 경우 농림축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빌린 영농자금 등은 포함하지 않고 가계용으로 빌린 돈만 포함한다.
 - 영농자금을 가계용으로 쓴 경우 부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동거인이나 영업상 사용인의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부채총액

10-1

차입방법과 작년 12월말 현재 부채 총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작년 12월말 현재 이미 계를 탄 경우 2001년 1월부터 계가 끝날 때까지 불입해야 할 총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입방법	작년 12월말 현재 부채 총액
①	금융기관 대출	□□억 □□□□만원
②	직장 대출	□□억 □□□□만원
③	사채	□□억 □□□□만원
④	현금서비스	□□억 □□□□만원
⑤	마이너스 통장	□□억 □□□□만원
⑥	계탄 후 불입해야 할 총액	□□억 □□□□만원
⑦	외상및할부액(신용카드미결제금)	□□억 □□□□만원
⑧	기타()	□□억 □□□□만원

- 2000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차입 방법별로 부채총액을 조사한다.

- 부채총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일괄 변제할 경우의 총액을 조사한다. 따라서 장래 지불할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그러나 장기대부의 경우 현시점에서 일괄 변제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기관에 문의하여 이자를 제외한 원금잔액만을 기입한다.

- 차입방법

① 금융기관 대출

은행, 보험회사, 신용금고, 투자신탁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를 말한다.

단,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빌려쓴 경우는 「 ①금융기관 대출」에 포함하지 말고 「⑤마이너스 통장」 항목에 조사한다.

② 직장대출

회사나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주택마련 자금 등을 빌린 경우를 말한다.

③ 사채

공인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로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빌린 돈도 포함한다.

④ 현금서비스

BC, 비자, 국민카드 등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2000년 12월 31일 현재 아직 갚지 않은(결제하지 않은) 금액을 조사한다.

⑤ 마이너스통장

약정기간동안 약정 한도 내에서 대출 및 상환이 자유롭고 약정기간 만기시 일시 상환하는 형태의 통장으로 2000년 12월 31일 현재 마이너스된 금액만을 부채로 조사한다. 약정 한도 전체 금액을 부채로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계탄 후 불입해야 할 총액

2000년 12월 31일 현재 끝나지 않은 계에 대해서 순번이 빨라 이미 계를 탄 경우 조사기준일(2000년 12월 31일) 이후 계가 끝날 때까지 불입해야 할 총 금액을 조사한다.

⑦ 외상 및 할부액(신용카드 미결제금)

신용카드, 할부금융을 이용한 대출, 월부나 외상으로 구입한 물건값의 2000년 12월 31일 현재 할부금잔액(또는 미결제금)을 조사한다.

⑧ 기타

()안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다) 부채용도

10-2

귀댁의 용자, 대출, 차용의 주된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우선하는 용도부터 3가지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
|-----------------------|---------------|
| ① 부동산구입(주택, 건물, 토지 등) | ② 전(월)세보증금 마련 |
| ③ 자동차구입 | ④ 의료비 마련 |
| ⑤ 결혼자금 마련 | ⑥ 교육비 마련 |
| ⑦ 증권투자자금 마련 | ⑧ 빚을 갚기 위해 |
| ⑨ 기타() | |

- 대출 받은 돈(빌린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또는 사용할 것인지 주된 용도를 가장 우선하는 순서대로 3가지이내로 조사하여 □안에 그 번호를 기입하도록 한다.

【기입예시】

10-2

귀댁의 용자, 대출, 차용의 주된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우선하는 용도부터 3가지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1, 8, 2

- | | |
|-----------------------|---------------|
| ① 부동산구입(주택, 건물, 토지 등) | ② 전(월)세보증금 마련 |
| ③ 자동차구입 | ④ 의료비 마련 |
| ⑤ 결혼자금 마련 | ⑥ 교육비 마련 |
| ⑦ 증권투자자금 마련 | ⑧ 빚을 갚기 위해 |
| ⑨ 기타() | |

○ 부채용도

① 부동산구입(주택, 건물, 토지 등)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부채
- 주택의 건축, 증·개축을 위한 부채
-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하여 할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전(월)세 보증금 마련

③ 자동차구입

- ④ 의료비 마련
- ⑤ 결혼자금 마련
- ⑥ 교육비 마련
- ⑦ 증권투자자금 마련
- ⑧ 빚을 갚기 위해
- ⑨ 기타()

()안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라) 지급이자

10-3 작년 1년 동안 가계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지불한 이자는
총 얼마였습니까?
연간 □□□□만원

- 주택구입, 자동차구입, 가계생활비 마련 등 가계를 위하여 빌린 돈에 대해 작년 1년 동안(2000. 1. 1 ~ 12.31) 지불한 이자의 총 금액을 조사한다.

8. 부동산에 관한 사항

1) 입주형태

11 작년 12월말 현재 살고 계셨던 주택은 자기집입니까?
해당하는 입주형태별로 각 질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 1 자가
- ☐ 2 전세
- ☐ 3 월세
- ☐ 4 기타()

- 2000년 12월 31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입주형태를 조사하고 해당 입주형태별로 관련 항목을 조사한다.

○ 2001년 1월 이후 전입 해온 가구의 경우는 전입해 오기 전 주택을 기준으로 입주형태를 조사한다.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① 자가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가구주나 가구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

② 전세

남의 집을 임차하여 집주인에게 정해진 금액을 임차기간 동안 이자없이 맡기고 이사갈 때 되돌려 받는 형태

③ 월세

- 월세 : 보증금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주택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
- 사글세 : 1년 또는 10개월치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형태
- 보증부월세 : 집주인에게 주택임차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임차기간동안 이자없이 맡기고 일부는 월세로 매월 지불하는 형태

④ 기타

사택 또는 무상주택

- 사택 : 가구주나 가구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나 회사 소유의 주택으로 소속직원에게 전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와 관리비 정도의 실비를 받고 임대한 경우
- 무상주택 :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나 가구원 소유의 집이 아니고 타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의 소유주택으로 주택임차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사는 형태

가) 자가인 가구

11-1	언제 구입(신축) 또는 상속/증여 받으셨습니까?
	년도 ☐ 구입 또는 신축 ☐ 상속 또는 증여받음 → 문항11-3으로 가십시오

- 2000년 12월 31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자기집이라고 응답한 가구에 대해서 구입(신축) 또는 상속/증여 받았던 연도를 조사한다.
- 구입(신축) 또는 상속/증여 받았던 연도를 조사한 후 「☐구입 또는 신축」, 「☐상속 또는 증여받음」을 ○표시하고 ☐에 표시한 가구(구입/신축)에 대해서는 구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었는지 조사한다.
- 아주 오래된 주택을 새로 신축한 경우는 그 신축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조사한다.

11-2	주택구입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구 분	금액
①	주택융자	억 만원
②	부동산 매각대금	억 만원
③	저축 또는 기타자산매각	억 만원
④	전/월세 보증금	억 만원
⑤	가족, 친인척 보조금	억 만원
⑥	기타()	억 만원
⑦	총계(※주택구입금액)	억 만원

① 주택융자

은행 등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융자를 받은 경우

② 부동산 매각대금

전에 살던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마련한 경우

③ 저축 또는 기타자산매각

주택마련저축 등과 같이 저축을 해 두었던 돈으로 구입했거나, 주식, 채권 등의 기타자산을 매각하여 마련한 경우

④ 전/월세 보증금

전에 살던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받은 돈

⑤ 가족, 친인척 보조금

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의 보조금

⑥ 기타

사채 등 ①~⑤이외의 방법으로 마련한 경우

⑦ 총계(※주택구입금액)

- 2000년 12월 31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구입금액 또는 신축금액을 조사한다.
- 주택구입자금 마련방법별 금액의 총계가 ⑦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1-3

작년 12월말 현재 시가로 얼마나 됩니까?

□□억 □□□□만원

- 구입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주택이 2000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다.
- 대상가구에서 시가를 모른다고 응답할 때는 주변에 비슷한 주거시설을 갖춘 주택의 시세를 참조하거나 인근 부동산중개인에게 문의하여 조사한다.
- 주택의 일부를 다른 가구에 임대한 경우라도 주택전체의 시세를 조사한다.

- 대상가구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시세를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전세인 가구

11-4	전세 보증금은 얼마였습니까?
	□억□□□□만원

- 임차한 기간동안 집주인에게 맡긴 주택임차료(전세보증금)를 조사한다.

다) 월세인 가구

11-5	월세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였습니까?
① 보증금	□억□□□□만원
② 월세	□□□만원

- 보증부월세가구는 「①보증금」란에 주택임차료 중 집주인에게 맡긴 월세보증금을 조사하고 「②월세」란에는 매월 지불하는 월세금액을 조사한다.
- 월세가구는 「②월세」란에는 매월 지불하는 월세금액을 조사한다.
- 사글세가구는 「②월세」란에 한꺼번에 지불한 1년 또는 10개월치의 집세를 1달 기준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기입예시】

- 사글세 100만원(10개월)에 살고 있을 경우

→ ② 월세

		1	0
--	--	---	---

만원

2)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외의 부동산

12 작년 12월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외에 소유하고 계신 토지, 건물, 주택이 있었습니까?

☐ 있었음

☐ 없었음

12-1 작년 12월말 현재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 소유하고 계신 토지, 주택, 건물이 각각 2건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시가를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작년 12월말 현재 시가	면 적
①토지(전답/임야/대지)	□□억 □□□□만원	()평
②주택(현 거주 주택 제외)	□□억 □□□□만원	()평
③건물(상가, 빌딩 등)	□□억 □□□□만원	()평
④분양계약금/중도금 납부액	□□억 □□□□만원	

- 2000년 12월 31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 토지(전답/임야/대지), 주택, 건물(상가, 빌딩 등)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물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를 조사한다.
- 건물(빌딩, 상가 등), 아파트, 토지 등을 분양 받아 2000년 12월 31일 현재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인 경우는 분양계약금, 중도금 납부액을 조사한다.
-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물이 2건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가를 합산하여 그 금액을 조사한다.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면적을 질문하여 평당시가로 응답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여 조사한다.

- 토지, 건물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상가구의 지분만큼 평가하여 기입한다.

【기입예시】

- 옆집 김동이네가 50%씩 투자하여 5억짜리 상가건물을 구입했는데 2000년 12월 31일 현재 시가가 8억인 경우

→ ③ 건물(상가, 빌딩 등) 억 만원

3) 임대한 주택 또는 건물의 임대보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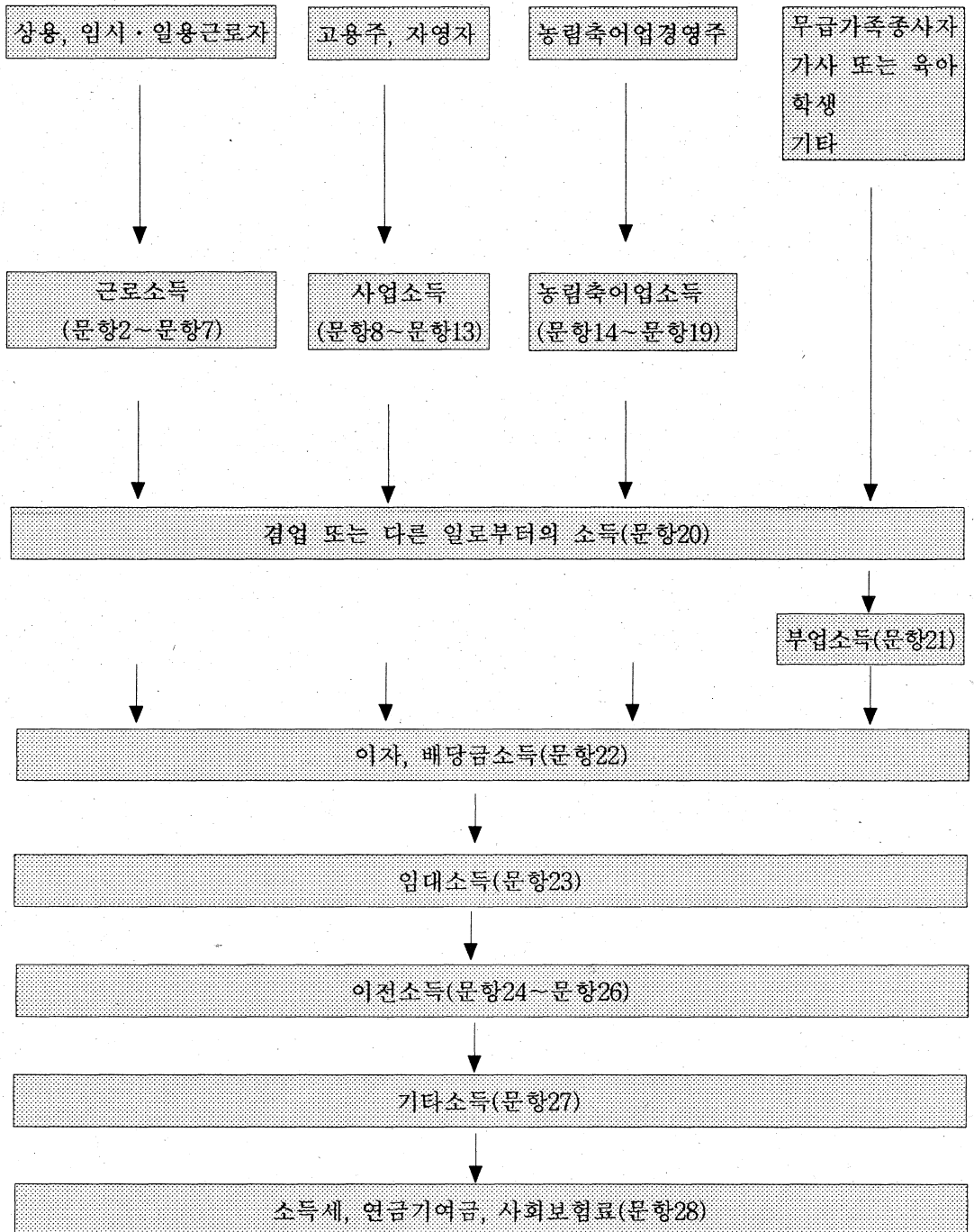
13	작년 12월말 현재 주택 또는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13-1 임대보증금은 모두 얼마였습니까? · 임대하신 주택 또는 건물이 2건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억 만원	

- 「문항 11」에 자가로 응답한 가구」 또는 「문항 12」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의 시가가 조사된 가구」에 대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그 주택 또는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임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조사한다.
- 임대한 주택 또는 건물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모두 합산하여 조사한다.

9. 소득에 관한 사항

- 2000년 12월 31일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중 만 15세이상 가구원에 대해서 각 가구원별로 작년 1년(2000. 1. 1 ~ 12.31) 동안의 근로 및 사업소득(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여부 및 연간소득금액을 조사한다.
- 가구의 소득은 소득항목 개인별 조사표를 이용하여 대상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 근로소득, 이자·배당금소득, 각종 정부 보조금, 임대소득, 장학금, 경조금 등 여러 가지 소득항목이 누락 없이 조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조사표로 조사한다.
- 소득과약시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 받은 것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 근로자가 임금을 현금 대신 현물로 받은 경우, 임대료 명목으로 현물을 받은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쌀, 채소 등의 현물을 받은 경우 등으로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등의 항목에 각각 포함하여 조사한다.
-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각종 부담금이 공제되기 전 소득금액을 조사한다.
- 누구의 소득인지 확실하지 않은 소득은 가구주소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가구원 중 같이 살고 있는 가사 사용인이나 영업상 사용인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는다

< 소득항목 조사 흐름도 >



1) 작년 1년 동안의 주된 활동

1	작년 1년 동안의 주된 활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상용근로자	→ 문항2로 가십시오	
②임시·일용근로자	→ 문항5로 가십시오	
③고용주(농림축어업제외)	}	→ 문항8로 가십시오
④자영자(농림축어업제외)		
⑤농림축어업경영주	→ 문항14로 가십시오	
⑥무급가족종사자	}	→ 문항20으로 가십시오
⑦가사 또는 육아		
⑧학생		
⑨기타		

- 종사했던 일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주된 활동을 조사한 후 해당되는 소득항목을 조사한다.
- 작년 1년 동안 활동상태가 변동된 경우는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기입예시】

- 가주주의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직장에 다니다가 4월부터 가사일만 한 경우
→ ⑦가사 또는 육아
- 4월까지 ○○은행에 다니다가 6월부터는 유급종업원을 3명을 고용하여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한 강동씨의 경우
→ ③고용주(농림축어업제외)

- 종사한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많은 쪽을 주된 활동으로 기입한다.

- 영외거주 직업군인은 「①상용근로자」로, 집에서 출퇴근하는 공익 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⑨기타」로 조사한다.

- ① 상용근로자 : 일반 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 ② 임시·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③ 고용주(농림축어업제외) : 1명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④ 자영자(농림축어업제외) :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자 또는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사람
- ⑤ 농림축어업경영주 : 농림축어업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

※ **농가, 어가의 정의**(2000년 농어업총조사 조사지침서에 따름)

- **농가**란 생계,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경지 10a(약 300평)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시점 현재 50만원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포함한다.
- **어가**란 판매를 목적으로 작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준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농림축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2명이상인 경우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농림축어업경영주로 조사하고 그 외의 가구원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한다.

【기업예시】

- 가구주와 가구주의 처가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했는데 가구주가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농업을 경영한 경우
→ 가구주 : ⑤농림축어업경영주
가구주의 처 : ⑥무급가족종사자
- 순돌이네는 돼지 10마리, 소 5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순돌이 아빠는 군청에 다니면서 축산일을 하고, 순돌이 엄마도 축산일을 하는 경우
→ 순돌이 아빠 : ①상용근로자
순돌이 엄마 : ⑤농림축어업경영주

⑥ 무급가족종사자 :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가족(동일가구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한 사람

⑦ 가사 또는 육아 :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사람

⑧ 학생 :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재학생도 포함한다.

⑨ 기타 : 연로자,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거나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 집에서 출퇴근하는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 등을 포함한다.

2) 근로 및 사업소득

- 주된 활동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고용주(농림축어업제외), 자영자(농림축어업제외), 농림축어업경영주로 조사된 가구원의 작년 1년 동안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조사한다.

상용근로자(문항2~문항4)

- 작년 1년 동안의 주된 활동이 상용근로자였다고 응답한 가구원에 대해서 그 일로부터의 소득을 조사한다.

가) 산업

2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	사업체명 _____
☐	사업체의 주된 활동 _____ ※

- 일한 곳의 사업체명과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질문하는 항목이다.
- 「사업체명」에는 조사대상자가 다녔던 회사 또는 기관의 이름을 줄여서 쓰지 말고 전체이름을 기입한다.
-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조사대상자가 하는 주된 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 항목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활동이 아니라 소속된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묻는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다녔던 직장 또는 사업체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 ※ 란에는 조사된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참고하여 『부록3.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부호를 기입한다.

나) 직업

3	무슨 일을 하십니까?
☐	일의종류 _____
☐	직명(직위) _____ ※

- 근무했던 사업체에서 조사대상자가 어떤 종류의 일을 맡아서 했는지 또는 수행해야 할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 「일의 종류」에 회사원, 공무원 등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또는 공장 등에서 맡은 일의 내용을 질문하여 기입한다.
- ※ 란에는 조사된 일의 종류, 직명(직위) 참고하여 『부록4.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부호를 기입한다.

다) 소득

4 총 급여는 얼마였습니까?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억만원

- 특정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총 급여는 급여소득, 상여금, 성과급** 등의 일체의 보수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전의 총액**을 조사한다.
- 근로의 대가로 현금대신 현물로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 **보조기입란**에 작년 1년 동안 그 일에 몇 개월 종사했었는지 기입하고 그 기간 중의 총 급여액을 조사한다.
- 급여소득이란 근로계약, 근로협약 또는 사업체의 급여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정기급여와 정상근로시간이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초과급여를 포함한다.

【예시】

기본급, 근속급, 능률급, 가족수당, 통근수당, 연월차수당, 장기근속수당, 전산수당, 특수근무수당, 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잔업수당 등

- 상여금이란 급여지급 규정에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급여로서 설날, 추석, 하기 휴가 등에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예시】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기말수당, 성과급 등

- 단, 사업체 내의 공제회, 상조회, 신용조합 등에서 받은 소득 및 사업체를 통하여 지급 받은 수혜금 등은 제외한다.

임시·일용근로자(문항5~문항7)

- 작년 1년 동안의 주된 활동에 「임시·일용근로자」라고 응답한 가구원에 대해서 그 일로부터의 소득을 조사한다.

가) 산업

5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 사업체명 _____ ☐ 사업체의 주된 활동_____ ※
--

- 일한 곳의 사업체명과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질문하는 항목이다.
- 「사업체명」에는 조사대상자가 다녔던 회사 또는 기관의 이름을 줄여서 쓰지 말고 전체이름을 기입한다.

- 여러 곳에서 일한 사람(파출부, 잡역부 등)과 매일 다른 곳에서 일한 사람은 일한 곳의 특징을 기입한다.

【예시】

- 파출부 - 낚의 가정에서
- 유리창 청소 - 낚의 건물에서

-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조사대상자가 하는 주된 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 항목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활동이 아니라 소속된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묻는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다녔던 직장 또는 사업체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 ※ 란에는 조사된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참고하여 『부록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부호를 기입한다.

나) 직업

6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일의종류 _____ ☐ 직명(직위) _____ ※

- 근무했던 사업체에서 조사대상자가 어떤 종류의 일을 맡아서 했는지 또는 수행해야 할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 ※ 란에는 조사된 일의 종류, 직명(직위) 참고하여 『부록4.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부호를 기입한다.

다) 소득

7 그 일의 대가로 받은 세금 공제 전 보수는 모두 얼마였습니까?

연간 만원

- 작년 1년 동안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일한 동안 받은 총 보수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총 보수로 세금 또는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전의 총액을 조사한다.
- 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에 대해서는 작년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누락 없이 조사하기 위해 **보조기입란**을 활용한다.
- 작년 1년 동안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의 지급방법(일급, 주급, 월급, 건당), 일한 기간(또는 건수), 해당 보수금액을 질문하여 총 보수금액을 누락 없이 조사한다.

고용주, 자영자(농림축어업 제외)(문항8~문항13)

- 고용주 또는 자영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소득(순수익)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소 유무, 종사자수 등과 함께 연간 총 비용, 총 매출액을 조사한다.
- 또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유업자 즉, 번역가, 작가, 작곡가 등(임금근로자가 아닌)의 소득도 여기에 포함한다.
- 연간 총 매출액과 총 비용을 조사한 후 총매출액보다 사업비용이 많아 적자로 나온 경우는 매출액이 과소 조사되거나 비용이 과다 조사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실제로 적자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적자요인, 생활비 조달방법 등을 추가 질문하여 사업순수익이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산업

8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	사업체명 _____
☐	사업체의 주된 활동 _____ ※

- 일한 곳의 사업체명과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질문하는 항목이다.
- 고용주 및 자영자는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을 기입하며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사업」 또는 「가족사업」이라고 기입한다.
- 상업인 경우에는 「사업체의 주된활동」에 도매, 소매는 물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명을 모두 기입한다.
- ※ 란에는 조사된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참고하여 『부록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부호를 기입한다.

나) 직업

9	무슨 일을 하십니까?
☐	일의종류 _____
☐	직명(직위) _____ ※

- ※ 란에는 조사된 일의 종류, 직명(직위) 참고하여 『부록4.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부호를 기입한다.

다) 사업장소 유무

10 사무실/공장/상점 등 일정한 사업 장소가 있었습니까?

- ☐ 있었음 ☐ 없었음

- 일정한 사업장소의 유무에 따라 사업체의 규모 또는 그 관련 비용 지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항목이다.

라) 종사자수

11 하시는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 ☐ 가족종사자 ☐명
☐ 유급종업원 ☐☐명

- 사업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가족종사자와 유급종업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마) 연간 총 매출액

12 연간 총 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억 만원

- 판매업인 경우에는 총판매액, 제조업인 경우에는 총출하액, 기타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총수입액을 조사한다.
- 조사대상기간(2000.1.1~12.31) 이전의 외상판매금을 조사대상기간에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조사대상기간의 외상판매분(미수령)은 포함한다.
- 총매출액과 사업소득을 혼동하여 응답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유의하여 조사한다.

바) 연간 총 비용

13	연간 총 비용(재료비, 인건비 등 제 경비)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억 만원

-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지출된 총 비용을 조사한다. 비용에는 상품 및 재료구입비,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조사한다.
- 사업비용은 상품 및 재료구입비, 인건비,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다.
 - 상품 및 재료 구입비 : 판매업인 경우에는 상품구입비, 음식업인 경우에는 재료비, 숙박업인 경우에는 비누, 칫솔 등의 구입비 등을 말한다.
 - 인건비 : 직원보수, 상여금, 현물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노임, 급료 등을 포함한다.
 - 기타경비 : 건물, 대지, 기계장치 등의 임차료 및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소모품비 등을 포함한다.

농림축어업 경영주(문항14~문항19)

- 농업 또는 어업의 경영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종자구입비, 노임, 농기구 구입비, 비료 및 사료비 등 농업이나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투입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이다.
- 가구내에 농림축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가구원을 농림축어업경영주로 선정하여 문항14부터 문항19를 조사한다.

가) 농림축업 종사여부

14	작년 1년 동안 농림축업에 종사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작년 1년 동안(2000.1.1~12.31) 생계, 영리를 목적으로 농림축어업에 종사했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항목이다.
- 농림축업에 종사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농림축업 판매수입, 자가소비평가액, 소요비용을 조사하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문항17로 가서 어업종사여부를 조사한다.

나) 농림축업 수입

15	작년 1년 동안 수확한 농림축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평가액은 얼마였습니까?		
농림축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평가액 (B)	합계 (A+B)	
□□억 □□□□만원	□□□□만원	□□억 □□□□만원	

- 보조기입란을 이용하여 작년 1년 동안 수확, 채취, 사육한 농림축산물의 총수확량, 판매량, 자가소비량, 판매 단가를 조사하여 판매수입, 자가소비평가액을 조사한다.
- 자가 생산한 농림축산물을 임차료, 임금 등으로 준 경우도 판매량에 포함하여 판매수입을 계상한다.
- 보조기입란을 이용하여 조사된 작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평가액을 모두 합하여 문항15의 「농림축산물 판매수입」, 「자가소비평가액」란에 그 금액을 각각 기입하고 「합계」란에 「농림축산물 판매수입」과 「자가소비평가액」을 합하여 그 금액을 기입한다.

< 보조기입란 활용방법 >

- 작년 1년 동안(2000. 1. 1 ~ 12.31) 수확한 농림축산물의 수확량, 판매량, 자가소비량을 조사하여 판매수입, 자가소비평가액을 조사한다.

종 류	단위	총수확량	판매량	자가소비량	판매단가	판매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총 계							

■ 농림축산물의 종류

· 미곡	: 메벼, 멥쌀, 찰벼, 찰쌀
· 곡류	: 미곡을 제외한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
· 채소	: 무, 배추 등
· 과실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자두 등
· 특용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 기타농작물	: 화훼, 병얇, 과수묘, 병묘, 조림용 묘목 등
· 농작물부산물	: 퇴비, 볏짚, 수수대, 콩대 등
· 임산물	: 밤, 잣, 호도, 장작 등
· 축산물	: 소, 젓소, 돼지, 닭, 개, 젓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가축(면양 등)

○ 농림축산물의 종류

- 미곡 : 메벼, 멥쌀, 찰벼, 찰쌀
- 곡류 : 미곡을 제외한 맥류, 잡곡, 두류, 서류
 - 맥류 : 보리, 보리쌀, 밀 등
 - 잡곡 : 옥수수, 좁쌀, 수수쌀, 기장, 메밀 등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땅콩 등
 - 서류 : 감자, 고구마
- 채소 :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 오이, 호박, 배추, 상추, 양배추, 시금치, 쪽갓, 미나리, 아욱, 근대, 열무, 고추, 마늘, 양파, 파, 무, 당근 등

- 과실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감귤 등
- 특용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 유지작물 : 참깨, 유채, 들깨, 해바라기, 피마자 등
 - 섬유작물 : 삼, 모시, 면화, 수세미 등
 - 약용작물 : 인삼, 박하, 제충국, 구기자, 모란, 백작약, 산수유 등
 - 기호작물 : 담배, 차, 호프 등
 - 기타 : 양송이, 표고버섯, 싸리버섯, 느타리버섯, 왕골 등
- 기타농작물 : 화훼, 뽕잎, 과수묘, 뽕묘, 조림용 묘목 등
 - 화훼 : 꽃, 화초, 관상수 묘목 등
 - 기타 : 과수묘, 삼묘, 조림용 묘목, 뽕잎 등
- 농작물부산물 : 벳짚, 보리짚, 밀짚, 수수대, 콩대, 퇴비 등
- 임산물
 - 원시취득물 : 산나물, 들나물, 산야초, 나뭇가지
 - 임산물 : 밤, 잣, 호도, 숯, 장작, 목재
- 축산물
 - 대동물 : 한우, 젓소, 돼지, 염소, 말, 사슴, 꿀벌 등
 - 소동물 : 개, 고양이, 토끼 등
 - 가금 : 닭(육계, 산란계), 오리, 거위, 칠면조, 꿩, 메추리 등
 - 기타 : 우유, 계란, 벌꿀, 오리알, 메추리알, 꿩알, 가죽털 등

○ 총수확량

작년 1년 동안(2000. 1. 1 ~ 12. 31) 수확한 농림축산물별 총수확량을 조사한다.

○ 판매량

- 작년 1년 동안 수확 또는 사육한 농림축산물의 판매량을 조사한다.
- 자가 생산한 농림축산물을 임차료, 임금 등으로 준 경우도 판매량에 포함한다.

○ 자가소비량

작년 1년 동안 대상가구에서 생산한 농림축산물을 가구에서 소비했거나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준 것을 포함한다.

○ 판매수입

- 조사대상가구에서 생산한 작물을 농협이나 상인 또는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 받은 금액으로 판매량과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자가소비평가액

조사대상가구에서 생산한 작물을 자기가 소비했거나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준 자가소비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기입한다.

【기입예시】

종 류	단 위	총수확량	판매량	자가소비량	판매 단가	판매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팥 콩	자루(40kg)	100	60	20	2,250원	540만원	180만원
	"	10	4	6	2,280원	36만원	55만원
총 계						576만원	235만원

다) 농림축업 지출

16

작년 1년 동안 농작물 생산, 가축 사육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합하여 얼마였습니까?

연간 □□억 □□□□만원

- 작년 1년 동안 농림축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투입한 일체의 비용을 모두 조사한다.
- 보조기입란을 이용하여 작년 1년 동안(2000.1.1~12.31) 농지 및 농업 장비 임차료, 인건비, 종자구입비, 비료 및 농약, 영농광열비, 운송비, 저장비, 가축구입비, 사료비 등 농작물 생산 및 가축사육에 소요된 비용을 각각 조사한 후 합산하여 문항16에 기입한다.

< 보조기입란 활용방법 >

- 농림축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을 누락 없이 조사하기 위하여 보조기입란에 각 지출항목별로 작년 1년 동안 지출한 비용을 조사한다.

지출항목	연간지출금액	지출항목	연간지출금액
농지임차료		영농광열비	
농업장비임차료		운송비	
인건비		저장비	
종자구입비		가축구입비	
비료 및 농약구입비		사료비	
		영농시설비	
		기타	

- 지출항목
 - 임차료 : 논, 밭, 수원지, 대지, 건물 등의 임차료와 농기구 및 역축의 임차료
 - 인건비(노임) : 상시고용 또는 임시고용한 인부에게 지불한 현금 및 현물노임
 - 종자구입비 : 각종 종자와 묘, 과수묘목(관상수 묘목 포함) 구입비

- 비료비 :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 농용석회, 규산질 등 각종 비료 구입비
- 농약비 :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전착제, 발근제, 종자소독제 등 모든 농약 구입비
- 영농광열비 : 영농에 사용한 전기료 및 유류비
- 가축구입비 : 병아리, 오리, 거위, 토끼, 개 등 동물구입비 및 가축의료비, 가축교배료 등
- 사료비 : 쌀겨, 밀기울, 배합사료, 콩깨묵 등 일체의 사료구입비
- 영농시설비 : 영농시설물 설치에 드는 철재 파이프, 비닐, 벧집, 새끼, 수숫대, 목재, 브록크, 시멘트 등의 비용
- 기타
 - 양잠비 : 잠종구입비, 상업대, 잠구비 등 일체의 양잠비용
 - 자재 및 원료비 : 가마니, 새끼 등의 구입비와 포장재료, 온상재료 등 자재구입비
 - 수리조합비 : 농지개량 조합비, 기타수리조합비 및 암거, 명거 등의 간단한 수리비에 든 현금 및 현물
 - 도정료 : 정미, 정맥, 제분료 및 잡곡 도정료 등
 - 농구비 : 대농구 경상수리비와 낫, 호미, 삽 등 소농구 구입비 및 수리비
 - 기타 : 농축산물 검사료, 농지 분필·합필에 드는 등기료, 측량비용, 농림채업용으로 대출한 부채에 대한 이자 등

【기입예시】

지출항목	연간지출금액	지출항목	연간지출금액
농지임차료	140만원	영농광열비	30만원
농업장비임차료		운송비	
인건비		저장비	
종자구입비	43만원	가축구입비	
비료 및 농약구입비	120만원	사료비	
		영농시설비	38만원
		기타	

라) 어업종사여부

17 작년 1년 동안 어업에 종사하셨습니다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년 1년 동안(2000.1.1~12.31) 생계, 영리를 목적으로 어로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에 종사했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항목이다.
- 수산가공업만 하는 가구는 「고용주, 자영자(농림축어업제외)」에서 사업소득을 조사하고, 어로어업이나 양식어업과 함께 수산가공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어업소득을 조사한다.
- 어업에 종사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어업수입과 어업지출을 조사하고,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문항20으로 가서 다른 일로부터의 소득을 조사한다.
- 어업
 - 어로어업 : 어선, 어망, 어구 등을 사용하여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
 - 어류 : 일반 해면어업에서 어획되는 고등어, 갈치, 붕장어 등
 - 갑각류 : 새우, 꽃게 등
 - 연체동물 : 오징어, 문어 등
 - 해조류 : 자연산 미역, 톳, 우뚝가사리 등
 - 기타 : 해삼, 우렁챙이(멍게), 성게, 미더덕, 갯지렁이 등
 - 양식어업 :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 수산동식물 등을 기르는 것
 - 해조류 : 자연산을 제외한 천해 양식산으로 김, 미역, 다시마 등
 - 어류 : 뱀어, 광어, 돔, 송어 등
 - 종패 : 피조개, 우렁챙이 등
 - 패류 : 굴, 바지락, 꼬막 등

- 수산가공업 :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이나 양식한 수산물을 원료로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1차 가공하는 것

마) 어업수입

18

작년 1년 동안 출하한 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평가액은 얼마였습니까?

수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평가액 (B)	합계 (A+B)
□□억 □□□□만원	□□□□만원	□□억 □□□□만원

- 보조기입란을 이용하여 대상가구에서 작년 1년 동안(2000.1.1~12.31)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 양식어업·수산가공업으로 출하한 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평가액을 조사한 후 그 금액을 문항18에 기입한다.

< 보조기입란 활용방법 >

- 어로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으로 구분하여 작년 1년 동안의 해당 수산물의 총수확량, 판매량, 자가소비량, 판매단가를 조사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평가액을 계산하여 기입한다.

종 류	단 위	판매량	자 가 소비량	판매 단가	판매 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어로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						
총 계						



· 어로어업 :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 양식어업 :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어업

○ 자가소비량

조사대상가구에서 수산물을 소비했거나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준 것

○ 판매수입

- 조사대상가구에서 수산물을 수협이나 상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받은 금액으로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상한다.
-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임차료, 임금 등으로 준 경우도 판매량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판매대금으로 현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포함한다.

【기입예시】

종 류	단위	판매량	자 가 소비량	판매 단가	판매 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어로어업 어류	ton	15	0.5	290,000원	435 ² 만원	15 ² 만원
양식어업 연체동물	kg	200			500 ² 만원	20 ² 만원
수산가공업						
총 계					935 ² 만원	35 ² 만원

바) 어업지출

19

작년 1년 동안 수산물의 포획 또는 양식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얼마였습니까?

연간 □□억□□□□만원

○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투입한 일체의 비용을 모두 조사한다.

○ 보조기입란을 이용하여 작년 1년 동안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투입한 인건비, 선박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조사한 후 총금액을 문항19에 기입한다.

< 보조기입장 활용방법 >

- 어로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을 경영하면서 지출된 비용을 각 항목별로 조사한다.

지출항목	연간지출금액	지출항목	연간지출금액
선박임차료 선박유지비 기타임차료		시 설 비 인 건 비 기타경비	

○ 어로지출

- 임차료 : 토지나 어구의 임차료
- 노임 : 고용한 선원 및 어부에게 지불한 현금 및 현물노임
- 미끼구입비 : 어로작업에 사용되는 일체의 미끼류 구입대금
- 얼음구입비 :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얼음구입비
- 수산물보관 상자 구입비 : 어상자 및 용기류 구입비
- 광열비 : 고기잡이를 할 때 사용되는 배의 연료비 및 생산물을 말릴 때 드는 유류 등 연료 구입비
- 어로작업용 물품 구입비 : 작업복, 비옷, 장화, 장갑, 전구, 형광용 밧데리, 물통, 렌턴, 선상취사용 LPG 및 부탄가스 등 어로작업상 필요한 물품 구입비 일체
- 소어구 구입 및 경상수리비 : 어망, 닻줄 등 소어구 구입비와 어망, 연승, 통발 등 소어구를 보수하기 위한 재료구입비 및 수리비
- 위판수수료 : 위판시의 수수료, 하선비, 하차비, 전열비, 경비비 등

○ 양식지출

- 종묘비 : 양식장에 뿌릴 치어, 종패, 치패 등의 종묘구입비
- 양식시설 및 보수비 : 김, 굴, 미역, 고막, 해삼, 어류 등 양식시설을 위한 뗏목, 수하연, 부자, 닻줄, 항목 등의 구입비용과 보수유지비 일체
- 노임 : 양식장 시설에 보수, 관리, 양식작업 등에 따른 상용과 임시 고용자에게 지불한 현금 및 현물노임과 급여물 일체

- 광열비 : 양식시설의 보수관리에 따른 연료 및 윤활유 등의 광열비 일체
- 사료비 : 양식용 사료구입비
- 위판수수료 : 위판시 수수료
- 임차료 : 양식장 임차료

○ 수산가공지출

어류, 해조류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처리 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 가공재료비 : 수산가공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소금, 갈퀴, 물통, 바구니, 깔판, 종이상자 등 재료구입비
- 시설보수비 : 수산가공을 위한 가마솥, 건조기, 전기시설비, 버너시설비, 간이 막사 등 시설물 설치비용 및 보수유지비 등
- 노임 : 수산가공업에 고용된 상용 및 임시고용자에게 지불한 현금 및 현물노임과 급여
- 광열비 : 수산가공시 소용되는 전기료, 삶거나 건조 등에 소비되는 연료와 윤활유 등

3) 겸업 또는 다른 직업으로부터 소득

20 주된 활동 이외에 작년 1년 동안 다른 일로부터 소득이 있었습니까?

-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20-1 그 일들로부터의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소득의 원천별로 작년 1년 동안 일하여 벌어들인 총 소득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천	일한 기간 동안의 총 소득금액	일한기간
①	임금근로소득	연간 만원	()개월
②	사업소득	연간 만원	()개월
③	농림축어업소득	연간 만원	()개월

- 문항1에서 ①상용근로자~⑤농림축어업경영주에 응답한 가구원 중 주된 활동으로 응답한 직업이외에 **겸업**한 직업이 있었거나 작년 1년 동안 **다른 직업**이 있었던 경우, ⑥무급가족종사자~⑨기타로 응답한 가구원 중 작년 1년 동안 직업이 있었던 가구원을 대상으로 그 직업으로부터의 소득을 조사한다.

【예시】

- 전기안전공사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주가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는 경우(겸업)
 - 1월부터 8월까지 〇〇회사 과장으로 근무했던 〇〇씨가 9월에 벤처회사를 창업하여 경영주로 일하고 있는 경우
 - 1월부터 3개월간 〇〇자동차 영업소에서 자동차판매영업을 하다가 그만 두고 집에 있는 경우
- 소득은 그 원천별로 임금근로소득,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 임금근로소득 :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의 대가로 근무처(직장 또는 사업체)에서 받은 현금 또는 현물보수로 세금 또는 각종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조사한다.
 - 사업소득 : 자영자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총매출액이나 총수입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 일체의 사업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조사한다.
 - 농림축어업소득 : 농업 또는 어업의 경영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종자구입비, 노임, 농기구구입비 등 농업이나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조사한다.

4) 부업소득

21 작년 1년 동안 아르바이트 또는 부업으로 소득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21-1 그 일들로부터의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소득의 원천별로 작년 1년 동안 일하여 벌어들인 총 소득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천	일한 기간 동안의 총 소득금액
①	임금근로소득	연간 만원
②	사업소득	연간 만원
③	농림축어업소득	연간 만원

- 작년 1년 동안의 주된 활동이 학생 또는 주부 등으로 학업 또는 가사/육아일에 종사하면서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조사한다.
- 소득은 그 원천별로 임금근로소득,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기입예시】

- 청주댁이 작년에 2개월 동안 남편이 쉬는 주말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여 50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경우 : 임금근로소득 연간 5 0 만원
- 전업주부인 순자씨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때 임시조사원으로 일하여 30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경우 : 임금근로소득 연간 3 0 만원
- 대학생인 보리씨가 학생라틴을 하여 200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경우:
사업소득 연간 2 0 0 만원
- 허씨 할머니가 공터에 기른 콩을 옆집 손이네에게 팔아 10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경우 : 농림축어업소득 연간 1 0 만원
- 작년 1년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희동씨는 매월 10만원씩 받았음 : 임금근로소득 연간 1 2 0 만원

5) 이자, 배당금소득

22 작년 1년 동안 이자소득 또는 배당금소득이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22-1 이자소득 또는 배당금소득은 모두 얼마였습니까?

· 예·적금이자, 공·사채이자, 주식배당금, 신탁배당금 등을 모두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만원

- 작년 1년 동안 금융기관에 맡긴 돈이나, 회사나 개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소득, 국공사채의 만기에 받은 이자소득, 주식 또는 신탁 배당금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조사한다.

6) 임대소득

23 작년 1년 동안 임대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저작권이용료, 특허사용료 등)이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23-1 임대소득은 모두 얼마였습니까?

· 주택, 건물, 농지 등 부동산임대료, 저작권이용료, 어선임대료 등의 임대소득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만원

- 작년 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토지나 가옥 등의 부동산임대 소득, 저작권이용료 등의 기타임대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와 연간임대 소득을 조사한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임대소득으로 조사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조사한다.

- 건물임대료소득

- 자가인 가구는 주택의 일부를 보증부월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매월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로 받고 있는 주택임대료를 조사한다.
- 주택이외에도 상가건물, 사무실용 건물 등의 임대료소득 여부를 확인 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토지임대소득

논, 밭, 과수원 등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로 현물로 받은 경우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 기타임대소득

건물, 토지이외의 재산으로 자동차, 각종 가구류, 집기, 어선 등과 같은 유형 자산이나 저작권, 특허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수입을 모두 조사한다.

7) 이전소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공적인 사회보장 수혜와 민간회사나 단체 또는 부모, 형제, 친지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조받은 사적인 생활보조금을 조사한다.

24 작년 1년 동안 연금을 지급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24-1 지급 받으신 연금의 종류와 연간수령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연금종류	① 공무원연금 ② 사립학교 교원연금 ③ 군인연금 ④ 국민연금 ⑤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② 연간수령액	연간 만원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과 같이 각종 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지 여부와 연간수령액을 조사한다.

- 지급 받은 연금의 종류의 해당번호에 ○표시한다.

○ 퇴역군인, 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사였던 가구원의 경우 작년 1년 동안 연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25 작년 1년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25-1 지급 받은 보조금의 종류와 연간수령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의 종류	연간 수령액
①	생활보호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보조금	연간 만원
②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연간 만원
③	장애인 보조금	연간 만원
④	65세이상 노인 보조금	연간 만원
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조금(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연간 만원
⑥	실업급여	연간 만원
⑦	기타(훈려수당 등)	연간 만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각종 생활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연간수령액을 조사한다.
- 지급 받은 보조금의 종류별로 연간 수령액을 조사한다.
- 보조금의 종류

① 생활보호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보조금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2000.1~9, 보건복지부, 2000생활보호사업안내서에 따름)

(생계보호)

- 가구의 소득수준 및 가구규모에 따라 생계비^{주)} 차등지급
- 명절(설·추석) 특별위로비
거택보호 가구당 53,400원 지원
- 해산 및 장제보호비
해산보호비 : 생활보호대상자중 출산여성에게 1인당 18만원 지원
장제보호비 :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사망시 구당 5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사망시 구당 20만원 지원

주) 부록9.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급여기준표 참고

(한시적 생활보호)

-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로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자

· 급여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소득(1인당)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4만원 초과	30,000	50,000	69,000	-	-	-
24만원 이하	79,000	150,000	210,000	250,000	290,000	320,000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1인 급여액(53,300원)에 가구원 수를 곱하여 산출(거택보호자 생계급여비 산출방식과 동일)

(자활보호)

- 지원기간 : 1~3월(3개월)
- 지원금액

(단위 : 원/월)

가구규모 소득(1인당)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4만원 초과	30,000	50,000	-	-	-	-
24만원 이하	79,000	150,000	210,000	250,000	290,000	320,000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1인 급여액(53,300원)에 가구원 수를 곱하여 산출(거택보호자 생계급여비 산출방식과 동일)

-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2000.10~12)

· 보호대상

가족의 소득 합계(소득인정액)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보호 대상이 된다. 4인 가족의 경우 2000년 최저생계비는 93만원이다. 소득합계가 이보다 적어도 재산이 너무 많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급여수준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 만큼 지급된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해산비는 출산 여성 1인당 18만원이며, 장제비는 근로능력 있는 가구는 사망자 1구당 20만원, 근로능력 없는 가구는 50만원씩이다.

< 200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금액(원/월)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②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된다.

· 지급보상금

정기보상금^{주)} : 기본연금,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수시보상금 : 사망일시금, 군인사망보상금, 전투경찰순경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사망 및 상이급여금

주) 부록10. 2000년도 국가유공자 1인당 보상금 월지급액표

③ 장애인보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된다.

· 장애수당지급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 장애인을 대상
1인당 월 4만5천원을 분기별로 지급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기타 장애인 복지시책

철도 50%, 도시철도(전철,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

전화요금 할인(시내통화료 50%, 시외통화료 월 3만원 사용 한도 내에서 50% 할인)

TV수신료 전액 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

이동전화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20%할인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등

④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보조금

· 경로연금

대상 :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만 65세이상의 노인으로 본인과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저소득노인)를 대상으로 지급

지급액 :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 월5만원

80세미만 생활보호대상 노인 : 월4만원

저소득노인 : 월3만원

· 교통비보조금

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

지급액 : 분기별 3만원

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조금(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지급

·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 간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현행 간병료에 준한 간병급여를 지급

- 기타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⑥ 실업급여

- 수급조건

- 실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000.3.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중 6개월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 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되고, 급여금액은 구직급여와 동일

- 취직촉진수당(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⑦ 기타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

26 작년 1년 동안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주의 배우자, 가족, 친인척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생활비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26-1 보조 받으신 총 금액을 출처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연간 수령액
①	가구주의 배우자	연간 만원
②	가구주의 부모	연간 만원
③	가구주의 자녀	연간 만원
④	기타 친인척	연간 만원
⑤	사회단체	연간 만원

- 작년 1년 동안 취업 때문에 타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가족이 조사대상 가구로 보내온 돈, 자녀가 보내온 생활보조금, 본가에서 학생자취가구에 보내온 일체의 생활보조금, 민간사회단체에서 주는 생활보조금 등을 조사한다.
- 보조금의 출처별로 연간 보조금 총액을 조사한다.
- 가족 또는 친인척의 보조금의 경우 정기적인 생활보조금만 포함한다.
 - 주택구입비, 전세자금, 자동차구입비 보조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보조금은 순수한 보조금의 경우는 문항27(기타소득)에 조사하고, 추후에 값을 예정으로 보조받은 경우는 문항10-1(부채)에서 조사한다.

8) 기타소득

27 작년 1년 동안 퇴직금 일시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복권, 경품 당첨금, 보상금, 손해보험금, 경조금 등 기타소득이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27-1 작년 1년 동안의 총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항 목	총 액
①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명예퇴직금, 명예퇴직 위로금 포함)	연간□□□□만원
②	연금의 반환일시금	연간□□□□만원
③	경조금	연간□□□□만원
④	비경상적인 가족, 친인척의 보조금	연간□□□□만원
⑤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연간□□□□만원
⑥	손해보험금 탄 돈	연간□□□□만원
⑦	기타(복권/경품 당첨금, 장학금 등)	연간□□□□만원

○ 퇴직금일시금, 복권당첨금, 경조금, 보상금 등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을 조사한다.

○ 기타소득의 항목

①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명예퇴직금, 명예퇴직 위로금 포함)

퇴직금일시금, 중간정산 퇴직금, 명예퇴직금, 명예퇴직 위로금을 조사한다. 단,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연금의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연금(노령, 장애, 유족)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퇴하여 가입중에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받는 것이다.

-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이 된 때

③ 경조금

축의, 조의 등의 애경사로 받은 축의금, 조의금

④ 비경상적인 가족, 친인척의 보조금

가족, 친인척이 주택구입비, 자동차구입비 등 일시적으로(비경상적으로) 보조해 준 경우를 말한다.

⑤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⑥ 손해보험 탄 돈

⑦ 기타(복권/경품 당첨금, 장학금 등)

복권/경품 당첨금, 경마 등 오락경기에 의한 상금, 장학금 등으로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소득을 말한다.

10. 소득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 작년 1년 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소득세, 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연간 납부액을 조사한다.

28

작년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연간 납부액	비고
①	소득세		만원	
②	연금기여금		만원	1.공무원연금 2.사립학교교원연금 3.군인연금 4.국민연금 5.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③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료)		만원	
④	고용보험료		만원	

① 소득세

근로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종합소득세

- 작년 1년 동안 근무처에서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연말정산 후 실제 납부한 소득세를 조사한다.
-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를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자영업자의 경우 2000년 5월에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조사한다.

② 연금기여금

작년 1년 동안 납부한 각종 연금기여금의 연간납부액을 조사한다.

③ 건강보험료

작년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의 연간납부액을 조사한다.

(부록 11)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및 보험료 참고

④ 고용보험료

작년 1년 동안 급여에서 매월 공제된 연간 고용보험료를 조사한다.

(부록 12) 고용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참고

Ⅳ. 조사표 내용 검토 요령

1. 일반적인 사항
2. 가구조사표
3. 개인별 조사표

IV. 조사표 내용 검토 요령

조사담당자는 조사표 회수 및 내검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고
미비된 사항은 응답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보완한다.

1. 일반적인 사항

-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 금액을 조사하는 항목의 경우 조사표상의 단위(만원)에 맞게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기타에 표시된 경우 해당내용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입된 내용이 다른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한다.
- 항목전체가 해당 없을 경우 사선처리 되었는지 확인한다.

【예시】

- 문항 1-6 (혼인상태)에서 만 15세미만 가구원인 경우
- 문항 1-7 (결혼년도)에서 문항 1-6 에 ①미혼, ③사별, ④이혼으로 조사된 경우 등

2. 가구조사표

가. 조사표 표지

-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가 가구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가구별 조사표 총 부수(개인별 조사표 포함)와 가구용 조사표표지에 기입된 『○부중 ○부』의 부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가구원사항

- 가구원이 6명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가구원사항이 추가로 조사되어 편철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구원번호란에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구관리명부상의 가구원번호가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다시 확인한다.
- 가구용 조사표의 『I.가구원사항』에서 조사된 가구원 성명과 가구원 번호가 개인별 조사표에 기입된 가구원 성명 및 가구원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문항1-6) 혼인상태

- 2000년 12월 31일 현재 만 15세이상 가구원(1985년 이전 출생자)만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문항1-7) 결혼년도

- 문항1-6에서 ①미혼, ③사별, ④이혼으로 조사된 가구원이 문항1-7항이 조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다. 지출에 관한 사항

문항5) 소비지출

- 보조조사(주간별 지출조사)때 조사된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 또는 기 배부된 도시가계조사 가구의 작년 연간소비지출금액과 비교하여 문항1에서 조사된 연간지출금액이 타당한지 확인한다.

문항6) 송금 및 보조

- 가구원사항에서 작년 1년 동안 같이 살고 있지 않았던 가구주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 문항2에 타지에서 학업 중이었던 자녀에게 보내 준 교육비송금 등이 누락 없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문항7) 조세

- 문항11에서 자가소유가구로 조사되었거나, 문항12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외에 토지, 건물,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누락 없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문항8(가구내구제)에서 자가용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구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누락 없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구에서 응답한 자동차세 납부액이 부록에 있는 연간자동차세와 비교하여 동일한지 확인한다.
- 기타세금항목에 8월에 납부한 주민세 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이 누락 없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문항8) 가구내구제

- 총보유수량과 연도별 구입수량의 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기능이 복합적인 품목의 경우 각각 해당되는 품목에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저축 및 부채에 관한 사항

문항9) 저축

- 저축항목별로 잘 구분되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금액의 단위가 「만원」으로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문항10) 부채

- 영업용 부채 또는 영농자금 대출금이 포함되어 조사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차입방법별로 구분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 차입방법에 기타로 조사된 경우는 ()안에 기입된 내용이
①금융기관대출~⑦외상 및 할부액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확인한다.
- 조사금액의 단위가 「만원」으로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부채가 있었던 가구의 경우 부채에 대한 지불이자(문항10-3)가
누락되지 않고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마. 부동산에 관한 사항

문항11) 부동산

- 주택구입자금마련방법별(①~⑥)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는지 확인
한다.

- 사글세로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월세란에 한꺼번에 지불한 1년 또는 10개월치의 집세를 1달 기준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사택 또는 무상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가 「기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한다.

문항13) 부동산 임대보증금

- 문항11, 문항12에서 주택, 건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구에 대해서 주택, 건물, 토지의 임대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이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3. 개인별 조사표

가. 소득에 관한 사항

- 「I. 가구원사항」에서 조사된 출생년도에 1985년 이전(만15세이상)에 태어난 것으로 조사된 가구원에 대해서 개인별 조사표의 소득항목이 모두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1985년에 출생한 가구원은 만 15세(2000년 12월말 기준)로 개인별 조사표의 조사대상이다.
- 대상가구원의 가구원번호가 「가구원사항」에 기입된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문항13) 사업비용

- 문항12의 총매출액에서 문항13의 비용을 뺀 금액이 -(부)의 수치가 나오면 수입이 과소 조사되거나 지출이 과다 조사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다.

문항15) 농림축업 수입

- 보조기입란의 판매수입총계, 자가소비평가액총계과 문항15의 A, B란에 기입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농림축산물판매수입(A), 자가소비평가액(B)의 합이 합계란에 기입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문항16) 농림축업 지출

- 보조기입란의 각종 소요비용의 합계와 문항16에 기입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문항15의 농림축업 수입에서 문항16의 농림축업 지출을 뺀 금액이 -(부)의 수치가 나오면 수입이 과소 조사되거나 지출이 과다 조사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다.

문항18) 어업수입

- 보조기입란의 판매수입총계, 자가소비평가액총계와 문항18의 A, B란에 기입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수산물 판매수입(A), 자가소비평가액(B)의 합이 합계란에 기입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문항19) 어업지출

- 보조기입란의 각종 소요비용의 합계와 문항19에 기입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문항18의 어업수입에서 문항19의 어업지출을 뺀 금액이 -(부)의 수치가 나오면 수입이 과소 조사되거나 지출이 과다 조사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한다.

문항22) 이자, 배당금소득

- 가구조사표의 문항9(저축)에서 목돈예금, 목돈예탁, 주식, 채권항목에 조사된 사항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15세이상 가구원 중에서 이자 또는 배당금소득이 누락 없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문항23) 임대소득

- 문항11, 문항12에서 주택, 건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구에 대해서 주택, 건물, 토지의 임대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임대소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문항24) 연금

- 지급 받고 있는 연금의 종류에 한가지만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문항25) 사회보장수혜

- 2000년 1월부터 9월중에 생활보호대상가구였거나 10월 이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가구였던 가구에 대해서 각종보조금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65세이상 가구원에 대해서는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또는 교통비보조금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전에 회사에 다니다가 실직한 가구원의 경우 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문항26) 사적보조금

- 「가구원사항」 문항2에서 취업 때문에 가구주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가구에 대해서는 이 가족으로부터의 생활보조금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문항28) 소득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납부액

- 상용근로자로 문항4에 연간근로소득이 조사된 가구원에 대해서 소득세항목이 누락되지 않고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소득에 관한 사항 문항1에서 ①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근로자, ③고용주(농림축어업제외), ④자영자(농림축어업제외), ⑤농림축어업 경영주로 조사된 가구원에 대해서 소득세, 건강보험료가 누락없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연금기여금항목에 그 종류가 누락 없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V. 조사표제출

1. 조사표 및 가구명부 편철용 표지 작성
2. 조사표 및 가구명부 편철 요령
3. 조사표 제출

V. 조사표 제출

1. 조사표 및 가구명부 편철용 표지 작성

○ 보조조사표

조사지역, 가구수(총가구, 부적격가구, 불응가구, 조사된가구), 조사표매수, 조사구번호, 담당자성명을 빠짐없이 기입한다.

○ 본조사표

조사지역, 가구수(총가구, 부적격가구, 불응가구, 조사된가구), 조사표매수(계, 가구, 개인), 조사구번호, 조사담당자, 지도담당자성명을 빠짐없이 기입한다.

○ 가구명부

사무(출장)소명, 조사구수, 가구명부 매수를 기입한다.

2. 조사표 및 가구명부 편철 요령

○ 조사표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구별로 「조사표표지」를 이용하여 편철 한다.
- 조사표는 가구번호 순서에 의해 가구단위로 편철하되 가구내의 개인별조사표는 해당가구조사표 뒤부분에 연속하여 편철한다.
- 이때 가구조사표 사이에 개인별조사표를 편철하지 않도록 한다.

○ 가구관리명부

사무(출장)소별로 조사구번호 순서대로 편철한다.

3. 조사표 제출

- 각 담당자별로 정리가 완료된 조사표는 편철하여 각 사무(출장)소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제출 조사표류 및 서류

-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 보조조사표철
-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표철
-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구명부철
-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 조사표작성 현황표
- 답례품 지급명부

- 각 출장소에서는 관할 사무소로 조사표류를 제출하고 각 통계사무소에서는 취합된 조사표류를 사회통계과로 제출한다.

- 제출 조사표류 및 서류

-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 보조조사표철
-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표철
-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구명부철
- 조사표 제출 공문(조사표 작성현황표 별도 전송)

- 제출기한

- 2001. 5. 23 ~ 5.25

Ⅵ. 부 록

1. 조사표
2. 소비지출항목분류표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
5. 답례품 지급명부
6.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 조사표 작성현황표
7. 2000학년도 각급학교 납입금 징수액 현황(1인당 연액)
8. 배기량별 자동차세
9.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급여 기준표
10. 2000년도 1인당 국가유공자 보상금 월지급액표
11.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및 보험료
12. 고용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1. 조사표



지정통계 제 10129호

통계법 제 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조사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표



조 사 구 번 호	구 역 및 거 처 번 호	가 구 번 호	가구당 조사표부수	() 사무(출장)소
			총()부중 1부	지도담당자 ()
				조사담당자 ()



통계청

1. 가구원 사항

☐ 2000년 12월 31일 현재 댁에서 같이
살았던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합 계	남 자	여 자

가 구 원 번 호							
1-1 가 성 구 원 명	가구원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주주)					
1-2 가 구 주 와 의 관 계	가구주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 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 및 그 배우자 ⑥ 부모(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⑦ 조부모 ⑧ 미혼형제·자매 ⑨ 기 타	1					
1-3 성 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 자 ② 여 자						
1-4 출 생 년 도	실제 태어난 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 2000년에 태어난 경우 00년						
1-5 교 육 정 도	정규교육은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00. 안받았음(미취학포함)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4년제 미만) ⑤ 대학(4년제 이상) ⑥ 대학원						

만 15세 이상만 조사합니다.

1-6 혼 상 인 태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미 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 별 ④ 이 혼						
1-7 결 혼 연 도	언제 결혼 하셨습니까? 년 · 2000년에 결혼한 경우 00년						

2 작년 1년(2000. 1. 1~12. 31)동안 3개월이상 같이 살고 있지 않았던 가구주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사 유	가구주와의 관계	배 우 자	자 녀
취 업		명	명
학 업		명	명
기타(군입대 등)		명	명

II. 주거에 관한 사항

3 이 택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 1 단독주택
- 2 아파트
- 3 연립 및 다세대
- 4 기타(영업용건물내 주택, 오피스텔 등)

4 이 주택의 연건평(전용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평, m²

-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 아파트의 경우 평형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III. 지출

5 작년 1년 동안 귀댁의 생활비 중 다음 항목의 지출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항 목		연간 지출금액	항 목		연간 지출금액
①	식 료 품 비	만원	⑥	교 육 비	만원
②	주거 및 광열수도비	만원	⑥-1	보충교육비(사교육비)	만원
③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만원	⑦	교 양 오 락 비	만원
④	피복 및 신발비	만원	⑧	교 통 통 신 비	만원
⑤	보 건 의 료 비	만원	⑨	기 타 소 비 지 출	만원

[보조 기입란]

• 매월 지출이 이루어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 기입란을 활용하여 각 항목별 월평균 지출 금액을 조사한 후 연간지출금액을 조사합니다.

●주거 및 광열수도비

도시가스 등 난방연료비
- 겨울
- 여름
- 봄·가을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동주택 관리비
- 겨울
- 여름
- 봄·가을

●교육비

납입금
보충교육비(사교육비)
- 개인과외비
- 학원과외비
- 학습지방문지도
- 기타(방과후 특별활동 등)
문방구비

●현물

식사제공 받음
쌀
기타 식료품
피복
신발
교통비
통신비
가정용기기
교양오락용품기구
기 타

●교통통신비

공공교통(버스, 택시, 항공요금)
자동차구입비
자동차보험료
연료비
기타유지비
통신비
- 일반전화
- 이동통신
- 인터넷 및 PC통신이용료
- 기타통신

●기타소비지출

담배
이미용비
회비 및 기타 교제비
종교관계비
경조금

- 식 료 품 비 : 곡류,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해조류, 과일류,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외식비(학교급식비 포함) 등
- 주거 및 광열수도비 :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연료비 등
- 가구집기가사용품비 : 일반가구, 가정용기기, 식기주방용품, 침구 및 직물제품, 실내장식품, 가사사용인건료, 보육료 등
- 피 복 및 신 발 비 : 외의, 스웨터, 셔츠, 내의, 직물, 기타피복, 신발 등
- 보 건 의 료 비 :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진료비 및 입원비 등)
- 교 육 비 : 학교납입금, 교재비, 보충교육비(개인과외, 학원과외 등), 문방구비
- 교 양 오 략 비 : 신문, 잡지, 도서, 교양오락기구(TV, 오디오, 컴퓨터 등)구입, 극장입장료, 스포츠관람료, 스포츠시설 이용료, 문화시설 입장료, 교양오락강습료, 사진대, 단체여행비 등
- 교 통 통 신 비 :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자동차구입, 연료비, 정비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등), 통신비
- 기 타 소 비 지 출 : 담배, 이·미용비, 장신구·장식, 핸드백 등(구입비, 종교관개비, 교제비, 경조금, 기타잡비 등)

6 작년 1년 동안 다른 가구를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출하셨습니다?

·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보내주었던 생활보조금과 다른 지방 또는 다른 나라에서 학업을 했던 가족에게 지출되었던 교육비출금액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 지출하였음

2 지출하지 않았음

6-1 연간 지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억 만원

7 작년 1년 동안 귀덕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상속세, 주민세 등을 납부하셨습니다?

1 납부하였음

2 납부하지 않았음

7-1 작년 1년 동안 납부액은 얼마였습니까?

세금의 종류		납 부 액	
①	재 산 세	연간 만원	
②	종 합 토 지 세	연간 만원	
③	자 동 차 세	연간 만원	
④	기타세금(상속세,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연간 만원	

㉠ 작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었던 가구내구재에 대해서 수량을 구입년도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품 목 명	총보유수량	연도별 구입수량			
			97년이전	98년	99년	2000년
①	침 대					
②	소 파					
③	장 농					
④	식 탁					
⑤	냉 장 고					
⑥	김 치 냉 장 고					
⑦	가 스 오븐 레 인 지					
⑧	전 자 레 인 지					
⑨	식 기 세 척 기					
⑩	세 탁 기					
⑪	의 류 건 조 기					
⑫	에 어 컨					
⑬	온 풍 기 (팬 히 터)					
⑭	정 수 기					
⑮	진 공 청 소 기					
⑯	칼라TV(30인치 미만)					
⑰	칼라TV(30인치 이상)					
⑱	V T R (비 디 오)					
⑲	오 디 오					
⑳	비디오카메라(캠코더)					
㉑	피 아 노					
㉒	휴 대 용 전 화 기					
㉓	개 인용컴퓨터(P C)					
㉔	휴대용컴퓨터(노트북)					
㉕	오 토 바 이					
㉖	골 프 세 트					
㉗	스 키 세 트					
㉘	승용차 경차(800cc이하)					
㉙	승용차 소형(801~1499cc)					
㉚	승용차 중형(1500~1999cc)					
㉛	승용차 대형(2000cc이상)					

IV. 저축 및 부채

9 다음은 저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갯돈 불입금에는 작년 12월말 현재 아직 계를 타지 않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 주식, 채권은 작년 12월말 현재 시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 축 항 목		적립/불입/투자금 총액	
①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억 만원	
②	적금 부금(개인연금, 보험저외)	억 만원	
③	저 축 성 보 험	억 만원	
④	목 돈 예 금 (원금보장)	억 만원	
⑤	목 돈 예 탁 (원금보장안됨)	억 만원	
⑥	주 식	억 만원	
⑦	채 권	억 만원	
⑧	개인연금(저축·신탁·보험)	억 만원	
⑨	갯 돈 불 입 금	억 만원	
⑩	빌 러 준 돈	억 만원	

[보조 기입란]

- 저축항목별로 2개이상의 계좌가 있을 경우 월/분기 별 저축(보험료)금액, 총 납입월수 등을 질문하여 12월말 현재 총 적립·불입금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적금 부금(개인연금, 보험저외)

저축성보험(생명보험 포함)

개인연금(저축·신탁·보험)

갯돈 불입금

빌려준 돈

10 작년 12월말 현재 귀댁에서는 주택마련, 가계생활 또는 기타 용도로 빌려서 아직 갚지 못한 부채가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10-1 차입방법과 작년 12월말 현재 부채 총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작년 12월말 현재 이미 계를 탄 경우 2001년 1월부터 계가 끝날때까지 불입해야 할 총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 입 방 법		작년 12월말 현재 부채 총액			
①	금융기관 대출		억		만원
②	직장대출		억		만원
③	사채		억		만원
④	현금서비스		억		만원
⑤	마이너스 통장		억		만원
⑥	계탄 후 불입해야할 총액		억		만원
⑦	외상 및 할부액(신용카드 미결제금)		억		만원
⑧	기타()		억		만원

10-2 귀댁의 용자, 대출, 차용의 주된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우선하는 용도부터 3가지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
| 1 부동산 구입(주택, 건물, 토지 등) | 2 전(월)세 보증금 마련 |
| 3 자동차 구입 | 4 의료비 마련 |
| 5 결혼자금 마련 | 6 교육비 마련 |
| 7 증권투자 자금 마련 | 8 빚을 갚기 위해 |
| 9 기 타() | |

10-3 작년 1년 동안 가계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지불한 이자는 총 얼마였습니까?

연간 만원

V. 부동산

11 작년 12월말 현재 살고 계셨던 주택은 자기집입니까?
해당하는 입주형태별로 각 질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자 가

11-1 언제 구입(신축) 또는 상속/증여 받으셨습니까?

년도

2 상속 또는 증여

2 상속 또는 증여받음 ➡ 문항 11-3으로 가십시오.

11-2 주택구입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구분		금액	
①	주 택 용 자	억	만원
②	부 동 산 매 각 대 금	억	만원
③	저축 및 기타자산매각	억	만원
④	전 / 월 세 보 조 금	억	만원
⑤	가족, 친인척 보조금	억	만원
⑥	기 타 ()	억	만원
⑦	총 계(※주택구입금액)	억	만원

11-3 작년 12월말 현재 시가로 얼마나 됩니까?

만원

2 전 세

11-4 전세 보증금은 얼마였습니까?

만원

3 월 세

11-5 월세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였습니까?

१७

만약



만년

4 기 타

()

12 작년 12월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외에 소유하고 계신 토지, 건물, 주택이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12-1 작년 12월말 현재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 소유하고 계신 토지, 주택, 건물이 각각 2건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시가를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작년 12월말 현재 시가			면 적
①	토 지(전답/임야/대지)		억		만원 () 평
②	주 택(현 거주 주택 제외)		억		만원 () 평
③	건 물(상가, 빌딩 등)		억		만원 () 평
④	분양계약금/중도금 납부액		억		만원

13 작년 12월말 현재 주택 또는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13-1 임대보증금은 모두 얼마였습니까?

• 임대하신 주택 또는 건물이 2건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억 만원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 개인별조사표

■ 만 15세 이상 가구원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Ⅵ. 소 득

근로 및 사업소득

-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 고용주, 자영자(농림축어업제외)
- 농림축어업 경영주

부업소득

이자, 배당금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소득세, 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VI. 소 득

※ 가구관리명부상의 가구원번호

가구원성명

1 작년 1년 동안의 주된 활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1 상용근로자 → 문항 2로 가십시오.
- 2 임시·일용근로자 → 문항 5로 가십시오.
- 3 고용주(농림축어업제외)
- 4 자영자(농림축어업제외) → 문항 8로 가십시오.
- 5 농림축어업경영주 → 문항 14로 가십시오.

- 6 무급가족종사자
- 7 가사 또는 육아
- 8 학생
- 9 기타

→ 문항 20으로 가십시오.

■ 주된 활동이란?

※ 만 15세이상 가구원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의 주된 활동을 파악한 후 소득원천별 소득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활동상태가 변동된 경우는 「기간」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예)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의사였던 가구원이 출산으로 4월이후 가사일에만 종사한 경우

→ 주된활동은 「7. 가사 또는 육아」로 조사

- 상 용 근 로 자 :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일급 사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임
- 임 시 · 일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임
- 고용주(농림축어업제외) : 1명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임
- 자영자(농림축어업제외) : 유급종업원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자 또는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임
- 농 림 축 어 업 경 영 주 : 농림축어업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경우임. 농림축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2명이상인 경우는 그 중 1명만 농림축어업경영주로 조사함
- 무 급 가 족 종 사 자 : 일정한 보수없이 자기가족(동일가구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한 경우임
- 가 사 또 는 육 아 :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 학 생 :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수생도 포함함
- 기 타 : 연로자, 취업준비 또는 구직활동을 했던 경우 등 임

근로 및 사업소득

상용근로자

2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3 무슨 일을 하십니까?

○ 일의종류

○ 직명(직위) ※

4 총 급여는 얼마였습니까?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부담금 등을 공제하기전 금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 억 [] 만원

➔ 문항 20으로 가십시오.

[보조 기입란]

• 작년 1년 동안 근무한 기간 : _____ 개월

임시·일용근로자

5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 ☐ 사업체명 _____
- ☐ 사업체의 주된 활동 _____ ※ []

6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 일의 종류 _____
- ☐ 직명(직위) _____ ※ []

7 그 일의 대가로 받은 세금공제전 보수는 모두 얼마였습니까?

연간 [] 만원

➔ 문항 20으로 가십시오.

[보조 기입란]

	기간/건수	해당보수
① 일 급	_____	_____ 만원
② 주 급	_____	_____ 만원
③ 월 급	_____	_____ 만원
④ 건 당	_____	_____ 만원
합 계	_____	_____ 만원

고용주, 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8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 ☐ 사업체명 _____
- ☐ 사업체의 주된 활동 _____ ※ []

9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 일의 종류 _____
- ☐ 직명(직위) _____ ※ []

10 사무실/공장/상점 등 일정한 사업장소가 있었습니까?

- ☐ 1 있었음
- ☐ 2 없었음

11 하시는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 ☐ 1 가족종사자 [] 명
- ☐ 2 유급종업원 [] 명

12 연간 총 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 억 [] 만원

13 연간 총 비용(재료비, 인건비 등 제 경비)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 억 [] 만원

➔ 문항 20으로 가십시오.

[보조 기입란]

• 작년 1년 동안 사업한 기간 : _____ 개월

16 작년 1년 동안 농작물 생산, 가축 사육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합하여 얼마였습니까?

연간 억 만원

[보조 기입란]

• 농지 및 농업장비 임차료, 인건비, 종자구입비, 비료 및 농약, 영농광열비, 운송비, 저장비, 가축구입비, 사료비 등 농작물 생산 또는 가축사육에 소요된 비용을 조사하여 기입합니다.

지출 항목	연간지출금액	지출 항목	연간지출금액
농지임차료		영농광열비	
농업장비임차료		운송비	
인건비		저장비	
종자구입비		가축구입비	
비료 및 농약구입비		사료비	
		영농시설비	
		기타	

17 작년 1년 동안 어업에 종사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 문항 20으로 가십시오.

18 작년 1년 동안 출하한 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평가액은 얼마였습니까?

수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평가액 (B)	합계 (A+B)
억 만원	만원	억 만원

[보조 기입란]

• 어로어업으로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어업·수산물가공업으로 출하한 수산물의 판매량, 자가소비량, 판매단가를 조사하여 작년 1년 동안 출하한 모든 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평가액을 기입합니다.

종류	단위	판매량	자가소비량	판매단가	판매수입	자가소비평가액
어로어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업						
총계						



• 어로어업 :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 양식어업 :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수산동물을 기르는 어업

19 작년 1년 동안 어류와 수산물의 포획 또는 양식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얼마였습니까?

연간 [] 억 [] 만원

[보조 기입란]

※인건비, 선박 임차료 및 유지비, 기타 임차료, 시설비 등 어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조사하여 기입합니다.

지출항목	연간지출금액	지출항목	연간지출금액
선박임차료		시설비	
선박유지비		인건비	
기타임차료		기타경비	

문항1에서 ①상용근로자~⑥농림축어업경영주에 응답한 가구원 중 주된 활동으로 응답한 직업이외에 겸업한 직업이 있었거나 작년 1년 동안 다른 직업이 있었던 경우, ⑥무급가족종사자~⑧기타로 응답한 가구원 중 작년 1년 동안 직업이 있었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20 주된 활동이외에 작년 1년 동안 다른 일로부터 소득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20-1 그 일들로 부터의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소득의 원천별로 작년 1년동안 일하여 벌어들인 총 소득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천	일한 기간 동안의 총 소득금액	일한 기간
① 임금근로소득	연간 [] 만원	() 개월
② 사업소득	연간 [] 만원	() 개월
③ 농림축어업소득	연간 [] 만원	() 개월

부업소득

학생 또는 주부 등이 학업 또는 가사/육아일에 종사하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21 작년 1년 동안 아르바이트 또는 부업으로 소득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21-1 그 일들로 부터의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소득의 원천별로 작년 1년동안 일하여 벌어들인 총 소득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천	일한 기간 동안의 총 소득금액
① 임금근로소득	연간 [] 만원
② 사업소득	연간 [] 만원
③ 농림축어업소득	연간 [] 만원

이자, 배당금소득

22 작년 1년 동안 이자소득 또는 배당금소득이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22-1 이자소득 또는 배당금소득은 모두 얼마였습니까?

• 예 · 적금 이자, 공 · 사채 이자, 주식 배당금, 신탁 배당금 등을 모두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만원

임대소득

23 작년 1년 동안 임대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저작권이용료, 특허사용료 등)이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23-1 임대소득은 모두 얼마였습니까?

• 주택, 건물, 농지 등 부동산임대료, 저작권이용료, 어선임대료 등의 임대소득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만원

이전소득

24 작년 1년 동안 연금을 지급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24-1 지급 받으신 연금의 종류와 연간수령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연금종류	☐ 1 공무원연금 ☐ 2 사립학교 교원연금 ☐ 3 군인연금 ☐ 4 국민연금 ☐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②	연간수령액	연간 만원

25 작년 1년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25-1 지급 받으신 보조금의 종류와 연간수령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의 종류		연간 수령액	
①	생활보호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보조금	연간	만원
②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연간	만원
③	장애인 보조금	연간	만원
④	65세이상 노인 보조금	연간	만원
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조금(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연간	만원
⑥	실업급여	연간	만원
⑦	기타(훈련수당 등)	연간	만원

26 작년 1년 동안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주의 배우자, 가족, 친인척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생활비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26-1 보조 받으신 총 금액을 출처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출 처		연간 수령액	
①	가구주의 배우자	연간	만원
②	가구주 의 부모	연간	만원
③	가구주 의 자녀	연간	만원
④	기 타 친 인 척	연간	만원
⑤	사 회 단 체	연간	만원

기타 소득

27 작년 1년 동안 퇴직금 일시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복권/경품 당첨금, 보상금, 손해보험금, 경조금 등 기타소득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27-1 작년 1년 동안의 총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항 목		총 액	
①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명예퇴직금, 명예퇴직 위로금 포함)	연간	만원
②	연금의 반환일시금	연간	만원
③	경조금	연간	만원
④	비경상적인 가족 친인척의 보조금	연간	만원
⑤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연간	만원
⑥	손해보험금 탄 돈	연간	만원
⑦	기타(복권/경품 당첨금, 장학금 등)	연간	만원

소득세, 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28 작년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구 분	연간 납부액	비 고
①	소 득 세	연간 만원	
②	연금 기여금	연간 만원	1 공무원연금 2 사립학교 교원연금 3 군인연금 4 국민연금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③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료)	연간 만원	
④	고용보험료	연간 만원	

감 사 합 니 다

응답자 전화번호: () -

2. 소비지출항목분류표

식료품	이면수	단무지	케찹	주거	냉장고
곡류 및 식빵	삼치	장아찌류	마요네즈	월세	전기보온밥솥
쌀	도미	두부	물엿	주택설비및수선비	쥬스믹서기
찰쌀	생선회	땅콩	기타조미식품	목재	전자레인지
보리쌀	게	김치류	빵 및 과자류	유리	가스레인지
콩	굴	기타채소가공품	케이크	시멘트	정수기
팥	조개류	김	기타빵	벽돌	식기전조기
기타곡물	기타선어개	미역	한식과자	도배지	난로및온풍기
식빵	복어	기타해조	비스켓	장판	공기정화기
스낵(조리)빵	굴비	해조가공품	스낵과자	페인트	에어콘
피자과이	마른멸치	과실류	초콜렛	기타수선재료	선풍기
떡	마른오징어	사과	사탕	설비용품및기구	가습기
밀가루	간고등어	배	껌	주택수리임	세탁기
국수	새우젓	복숭아	아이스크림	도급공사비	전기청소기
라면류	멸치젓	포도	종합과자세트	기타주거	전기다리미
당면	기타젓갈류	밤	기타과자	공동주택관리비	기타전가정용기기
기타곡물가공품	기타염건어개	감	차, 음료 및 주류	화재보험료	기타가정용기기
육류	생선묵	감귤류	커피	기타주거	식기주발용품
쇠고기	맛살	참외	보리차	광열수도	주발대접
돼지고기	어포	수박	기타차	수도료	접시
닭고기	참치통조림	딸기	콜라	상수도	컵
기타생육	기타어개류통조림	바나나	사이다	하수도	홀셋트
갈비	기타어개가공품	키위	기타탄산음료	전기료	쟁반
생육부속물	채소·해조류	기타과실	파채류음료	연료	술
소시지	배추	과실통조림	두유	연탄	남비
햄	무우	기타과실가공품	이온음료	등유	주전자
베이컨	파	조미식품	생수	경유	후라이팬
육류통조림	시금치	참기름	기타음료	도시가스	보온병
튀김닭	상치	식용유	청주	LPG	항아리
기타육가공품	콩나물	들기름	탁주	기타연료	기타주방용용기구류
낙농품	감자	기타유지	소주	공동주택난방비	칼·수저
우유	오이	고추	맥주	가구집기가사용품	기타주방용집기구류
분유	당근	마늘	위스키	일반가구	가사잡화및소모품
버터	꽃고추	생강	기타주류	장농	조명기구
치즈	양파	후추가루	기타식료품	기타장농	가정용공구
요구르트	호박	카레	이유식	창식장	세탁청소용구
기타우유가공품	토마토	기타향신료	죽	화장대	기타가사잡화
달걀	고구마	설탕	커피프림	침대	전구
달걀가공품	도라지	소금	벌꿀	응접세트	화장지
어개류	가지	맛소금	건강식품	책상	고무장갑
갈치	양배추	참깨	기타식품	의자	세탁비누
명태	미나리	들깨	식료품가공비	식탁	세탁용합성세제
조기	버섯	간장	의식	밥상	섬유린스
고등어	산나물	된장	한국음식	기타일반기구	부엌용세제
꽂치	깻잎	고추장	중국음식	가정용기기	살충방충제
물오징어	피망	화학조미료	서양음식		건전지
가자미	부추	혼합조미료	기타식사의식		쿠킹호일
병어	기타채소	식초	학교급식대		기타가사소모품
			음주대		
			기타의식		

침구및직물제품 이불 모포 솜 방석 돗자리 기타침구류 수건 양탄자 커튼 기타직물제품 실내장식품 시계 거울 기타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가사사용인급료 보육료 쓰레기봉투 기타청소료 가구집기수선료 기타가사서비스	어린이내의 남자잠옷 여자잠옷 어린이잠옷 직물·실 양복지 양장지 한복지 기타직물 실 기타피복 남자양말 여자양말 어린이양말 스타킹 기타양말 모자 목도리 넥타이 장갑 기타피복 신발 남자구두 여자구두 아동화 운동화 실내화 기타신발 피복,신발서비스 재봉료 세탁료 수선료 기타피복신발서비스 보 건 의 료 의약품 인삼 한방보약 기타한약 감기약 소화위장약 영양제 항생제 피부의상약 피로회복제 기타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용품 안경	콘택트렌즈 기타보건의료기구 보건의료서비스 한방진료,입원비 외래진료비 병원입원치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교 육 납입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전문대학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대학원 교재비 중학교교과서 고등학교교과서 기타학교교재 참고서 가정학습지 학습용테이프 보충교육비 입시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기타예능계학원 태권도학원 기타체육계학원 사무,전산학원 기타보충교육 도서관 기타교육비 문방구 연필 볼펜 공책 사진첩 스케치북 기타종이제품 그림물감 기타학습용문방구 전자계산기 기타문방구	교 양 오 략 신문도서 일간신문 월간지 주간지 도서 기타인쇄물 교양오락용품기구 텔레비전 라디오 오디오 녹음기 사진기 캠코더 VTR 전자오락기 컴퓨터 디스켓 기타교양오락기구 피아노 양악기 국악기 어린이승용품 등산납시용품 운동기구 운동용품 운동복 레코드음반 CD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필름 완구 꽃 원예용품 애완동물 공예용품 기타취미오락용품 교양오락서비스 공연장입장료 KBS시청료 유선방송시청료 운동경기관람료 수영장이용료 볼링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기타시설이용료	문화시설입장료 운동장습료 교양오락장습료 자동차운전교습비 교육적장습료 사진촬영,인화료 비디오촬영료 단체여행비 교양오락기구수리 비디오테이프대수리 숙박비 기타교양오락서비스 교 통 통 산 교통 공공교통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기차 전철 국내항공 국제항공 자동차임차료 화물운송료 기타공공교통 개인교통 자동차구입 오토바이구입 자전거구입 관련용품구입 연료비 정비수리비 보험료 주차료 통행료 기타유지비 통신 국내전화료 국제전화료 일반전화기 이동전화기 무선호출기 우편요금 정보통신이용료 기타통신	기타 소비지출 담배 이미용 칫솔 치약 화장비누 샴푸 화장크림 화장수 화운데이션 기타화장품 전기이미용기구 종합이미용용품셋 기타이미용용품 이용료 미용료 기타이미용서비스 장신구 핸드백 가방 우산 손목시계 금 귀금속 기타장신구 장신구서비스 잡비 경조금 종교관계비 종교용품 희비및교제비 손해보험료 행정사법수수료 기타수수료 관혼상제비 기타잡비
---	---	--	---	---	---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A 농업 및 임업(01~02)			
01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 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 과일·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소사육업, 양돈업, 가금 사육업,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 농산물 선별, 건조 및 기타 처리장 운영업
02	임업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임업용 종묘 생산업, 육림업, 야생 임산물 채취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B 어업(05)			
05	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어로어업(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해면양식어업, 내수면 양식어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C 광업(10~12)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유·무연탄 광업, 갈탄 및 토탄 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1	금속 광업	철 및 비철금속을 함유한 금속광물을 채굴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철광업, 금·은 및 백금광업, 연 및 아연광업, 기타 비철금속 광업
12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한 비금속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활동이 포함 된다	석회석 광업, 고령도 및 기타 점토 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업, 건설용 쇄석 생산업, 모래 및 자갈 채취업,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소금 채취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D 제조업(15~37)			
15	음·식료품 제조업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료품 및 동물 사료, 식용 또는 비식용 동·식물성 유지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도축업,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일 및 채소 주스 제조업, 과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 및 유사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병과류 제조업,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당류 제조업, 사료제조업, 빵류 제조업, 떡류 제조업, 곡분과자 제조업, 설탕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커피 가공업, 차류 가공업,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주정 제조업, 소주 제조업, 발효주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청주 제조업, 맥아 제조업, 맥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16	담배 제조업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재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각종의 담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담배 재건조업, 담배제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섬유물질을 가공하여 생사 및 각종 섬유사, 연사, 끈, 로프, 망 및 기타 끈 제조, 각종 섬유사로 광폭직물, 세폭직물,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카펫 등의 직물 및 편조물 제조, 각종 섬유사, 직물, 편조물 및 직물제품의 염색, 표백 및 가공 정리 활동, 의복과 신발을 제외한 직물제품 제조, 직물에 다른 물질을 도포, 삼투, 방수 및 기타 처리한 가공직물 제조, 부직포, 펠트, 충전용 솜 및 기타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사 및 건 방적업, 면 방적업, 모 방적업, 화학섬유 방적업, 연사 제조 및 실 가공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면직물 직조업, 모직물 직조업, 견직물 직조업, 원단 편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스타킹 및 기타 양말 편조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날염가공업, 섬유사 및 직물 호부 처리업,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천막 및 기타 캔버스제품 제조업, 직물 포대 제조업, 용단 및 유사 마루 덮개 제조업, 끈 및 로프 제조업,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세폭직물 제조업,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구입한 각종 직물, 가죽 및 기타 재료(모피제외)를 재단·재봉하여 의복류, 모자 및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장 제조업, 내의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자제조업, 장갑 제조업,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원모피 가공처리업,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각종 원피를 가공처리하여 가죽을 생산하거나 천연가죽 조각 및 부스러기를 접착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재생가죽을 제조, 천연 및 재생가죽, 합성 및 대용가죽, 플라스틱, 직물, 경화섬유 판지 및 기타 재료로 가방, 핸드백, 동전지갑 제조, 각종 재료를 재단 및 재봉·접합·주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각종 목적용의 신발, 각반, 신발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피 가공업, 재생 및 특수 가공 가죽 제조업,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신발 부분품 및 재단제품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제재 및 목재가공업, 나무,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일반 제재업, 표면가공 목재 및 특수 제재목 제조업, 목재 보존 및 방부처리업, 단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목재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제조업, 목재 포장용 상자 및 유사 용기 제조업, 코르크 제품 제조업, 돛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나무, 님마, 고지 및 기타 섬유물질로 펄프를 제조하거나 펄프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종이를 재가공하여 가공지, 종이용기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펄프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가공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종이가방 및 포대 제조업, 식품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포장용 판지상자 및 기타 종이용기 제조업,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인쇄 및 인쇄관련 보조활동,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서적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음반 및 기타 음악 기록매체 출판업, 기타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경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록매체 복제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석탄을 처리하여 코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원유, 역청광물 및 이들의 분할물을 정제 또는 기타 처리하는 활동과 우라늄금속을 추출하거나 핵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핵연료 가공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 처리하여 단일 화합물, 혼합물 또는 복합 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석탄 화합물 제조업,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 화합물 제조업, 산업용 가스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합성연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품 약제품 제조업, 한의약 조제품 제제 제조업, 동물용 약제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농약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24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인쇄잉크 제조업, 회화용 물감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 재료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업 제조업,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재생섬유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구입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을 사출·압출·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가정용, 공업용 또는 기타용의 1차 제품,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타이어 재생업,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돌,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광물을 원료로 유리 및 유리제품,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와 이들의 가공품, 석재 가공품 및 암면제품 등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판유리 제조업,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26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착색골재 생산업, 아스콘 제조업,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연마재 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고로, 전기로, 압연 및 기타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광물, 금속스크랩 또는 찌꺼기를 제련, 정련·용해· 합금처리·주조·압출· 압연 및 연신·금속표면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제품 및 주물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철 및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주철관 제조업, 강관 제조업, 절단가공 및 표면 처리강재 생산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28	조립 금속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기계장비 및 가구를 제외한 각종 조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발 철물, 금속파스너 및 철선제품, 가정용 금속 제품 및 기타 조립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금속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핵반응기 제조업, 증기발생기 제조업,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압형 제품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날붙이 제조업, 일반철물 제조업, 수공구 제조업,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철선조립제품 제조업, 금속스프링 제조업,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금고 제조업, 수동식 식품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금속표시판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내연기관 제조업, 압축식 엔진 및 모터 제조업, 액체 펌프 제조업,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볼 및 롤러 베어링 제조업,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기체 여과기 제조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자동자료처리 및 그 주변장치를 포함하여 복사기, 등사기, 주소인쇄기, 타자기, 전자계산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컴퓨터제조업,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장치 제조업, 복사기 제조업,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절연 광섬유케이블 제조업, 절연 코드 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일차 전지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제조업,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전기용 탄소 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방송장비, 유선 전신 또는 전화용 기기,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 영상·음성기록 및 재생기, 음성증폭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관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전자저항기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방사선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 가구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물질 검사·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처리고정 제어장비 제조업, 안경제조업,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사진기, 영상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시계제조업, 시계부품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철동 장비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강선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오락 및 경기용 보트 제조업,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제조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가구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모조 장신·장식 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접용 목재가구 제조업, 나전 칠기가구 제조업, 금속가구제조업,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피아노 제조업, 현악기 제조업, 전자 악기 제조업, 국악기 제조업,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인형 제조업, 장난감 제조업, 영상게임기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장신용품 제조업, 조화 및 모조 장식품 제조업,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교시용 모형 제조업, 회전 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비 및 솔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 원료 생산업	수집된 재생재료(폐기물 제외)가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인 금속 또는 비금속 웨이스트, 스크랩 또는 제품 등의 재생용 물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 형태의 새로운 원료상태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전기업,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발전업, 송전업, 배전 및 판매업,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증기 및 온수 공급업
41	수도사업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생활용수 공급업, 산업용수 공급업
F 건설업(45~46)			
45	종합 건설업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반조성 공사업, 도로 건설업,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공사업,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산업플랜트 공사업, 조경 공사업,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의 건설과 관련한 특정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토 공사업, 포장 공사업, 철도궤도 전문 공사업,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 공사업,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우물 공사업, 비계 및 형틀 공사업, 철골 공사업, 철근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조적 및 석축 공사업, 지붕 공사업, 수중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방음 및 내화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일반전기 공사업,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46			일반 통신 공사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도장 공사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유리 공사업, 창호 공사업,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G 도매 및 소매업(50~52)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신상품 또는 중고 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이들의 부품 및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활동 및 차량용 연료, 윤활유, 냉각제의 소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자동차 신품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중고부품 및 중고 내장품 판매업, 이륜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이륜자동차 및 부품 소매업,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곡물 도매업, 종자 및 묘목 도매업, 사료 도매업,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산동물 도매업, 과일 및 채소 도매업, 육류 도매업, 수산물 도매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빵 및 과자 도매업, 낙농품 도매업, 주류 도매업, 비알콜 음료 도매업, 담배 도매업,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커튼 및 침구 용품 도매업, 셔츠 및 외의 도매업, 유아용 의류 도매업, 내의 도매업,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도매업, 신발 도매업, 가전제품 도매업, 가정용 가구 도매업,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51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화장품 도매업,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종이제품 도매업, 문구용품 도매업,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악기도매업,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유리 및 창호 도매업,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도료 도매업,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철근 도매업, 금속판, 봉, 관 및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금속광물 도매업,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산업용 기초화합물 도매업,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비료 및 농약 도매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직물 도매업,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도매업, 공작기계 도매업, 컴퓨터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매업,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51			의료,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업, 수송용 기계장비 도매업,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52	소매업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 판매, 소비조합, 행사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백화점,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곡물 소매업, 육류 소매업, 수산물 소매업, 과일 및 채소 소매업, 빵 및 과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음료 소매업, 담배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화장품 및 화장비누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한복 소매업, 남녀용 정장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내의 소매업,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류 액세서리 소매업, 신발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악기 소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가구 소매업,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소매업,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문구용품 소매업,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사무용기기 소매업, 안경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광학용품 및 정밀기기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52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연탄 및 기타 고체연료 소매업, 액체연료 소매업, 가스연료 소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전자 상거래업, 기타 통신 판매업,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방문 판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55)			
55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 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산업 활동과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호텔업, 여관업, 휴양 콘도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업, 한식점업, 중국 음식점업, 일본 음식점업, 서양 음식점업, 기관 구내 식당업, 기타 일반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간이 주점업, 제과점업, 찻집
I 운수업(60~63)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육상 운송설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차량 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61	수상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수상운송설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외항 여객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항만내 운송업, 기타 내육 수상 운송업
62	항공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기 항공 운송업, 부정기 항공 운송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취급업, 창고시설 운영업,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업, 기타 운송지원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일반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일반 및 국제 여행사업, 국내 여행사업, 기타 여행지원서비스업, 철도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도선업, 공항 운영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 운송 주선업, 화물 포장업
J 통신업(64)			
64	통신업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 사설 소포송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 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이 분류된다	우편업, 소포 송달업, 전기 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유선 전화 및 기타 유선 통신업, 무선 전화업, 무선 호출 및 기타 무선 통신업, 별정 통신업, 부가 통신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K 금융 및 보험업(65~67)			
65	금융업	보험 또는 연금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앙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기타 저축기관, 개발 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금융리스업, 투자신탁회사, 기타 투자 기관, 공공기금 관리회사
66	보험 및 연금업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연금기금을 모금,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생명 보험업, 개인 공제업, 사업 공제업, 연금업, 손해 보험업, 보증 보험업, 의료 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생명보험 재 보험업, 비 생명보험 재 보험업
6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증권 및 선물 거래소, 기타 금융 시장 관리업, 증권 중개업, 선물 중개업,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어음 교환업, 투자 자문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손해 사정업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			
70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공급업, 비 주거용 건물 공급업, 기타 부동산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감정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승용 자동차 임대업, 컨테이너 임대업,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서적 임대업, 경기 및 여가용품 임대업, 의류 임대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M 사업 서비스업(72~75)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기타 소프트 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 처리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농학 연구 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공학 및 기술 연구 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경제학 연구 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광고업, 전문 디자인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공공관계 서비스업, 경영 상담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지주회사,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 니어링 서비스업, 물질 성분 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 검사업, 측량업, 제도업지질조사 및 탐사업, 광고 대행업, 옥외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인물사진 촬영업, 상업용 사진 촬영업, 사진처리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인력 공급업, 고용 알선업, 탐정업, 경비업, 정보시스템 서비스업,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산업설비 청소업, 포장 및 충전업, 문서 작성업,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복사업, 물품 계량 및 견본 추출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신용조사 및 수금대리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가 포함된다	입법기관, 중앙 최고 집행기관, 지방행정 집행기관,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행정, 농림수산업 행정, 건설 및 운송 행정, 통신 행정, 기타 산업진흥 행정, 외무 행정, 국방 행정, 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서, 사회보장행정
O 교육 서비스업(80)			
80	교육서비스업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수준의 정규교육 기관, 성인교육 및 기타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컴퓨터 학원, 직업 훈련기관, 기타 사무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일반 입시학원, 언어학원, 방문 및 통신 교육 학원, 사회교육시설, 예술학원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85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조산원, 유사 의료업, 구급차 서비스업, 그외 기타 의료업, 수의업
86	사회복지사업	수용복지시설, 비수용 복지시설	노인 수용 복지시설, 신체장애인 수용 복지시설, 정신질환자 및 약물남용자 수용 복지시설, 아동 및 부녀자 수용 복지시설, 그외 기타 수용 복지시설, 보육시설, 직업재활원, 그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87	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	영화산업, 방송업, 공연산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만화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 방송업, 위성 방송업, 공연시설 운영업, 녹음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공연단체, 공연예술가, 비공연예술가, 공연기획업,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 공연관련 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뉴스제공업,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기타오락관련 사업	뉴스제공업,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부호	증분류	내용설명	예시
88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기타 경기 전문종사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방 운영업, 해수욕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기원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90~93)			
90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하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하수 처리업, 분뇨 처리업, 축산폐기물 처리업,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축폐기물 처리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산업 및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기타 회원단체	산업단체,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불교단체, 기독교 단체, 천주교단체, 민족종교 단체, 기타 종교 단체, 정치단체, 환경운동단체, 기타 시민운동 단체, 그외 기타 회원 단체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92	수리업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기타 일반 기계 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3	기타서비스업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95)			
95	가사 서비스업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개인 가사서비스,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 등의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사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99)			
99	국제 및 외국 기관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 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 대사관 및 기타 외국지역 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이 포함된다	주한 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 기관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1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	법률과 규칙을 제정, 비준, 개정 및 폐지하고, 정부를 대표·대리하며 정부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지휘·조언한다.	의회의원, 정부(중앙 및 지방) 고위 공무원,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02	행정 및 경영 관리자	행정 및 경영관리자는 정부기관, 기업 및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휘 및 조정한다.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부서 관리자,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기타부서 관리자
03	일반관리자	1인 이하 다른 관리자의 협조와 일정수의 비관리직의 보조하에 소규모 기업과 단체를 대표하고 해당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한다. 또한 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 주된 활동이 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여기에 포함한다.	농림어업 일반관리자, 광공업 일반관리자, 건설업 일반관리자, 도소매업 일반관리자, 숙박및음식점업 일반관리자, 운수및통신업 일반관리자, 사업서비스업 일반관리자, 위생·수리및개인관련 서비스업 일반관리자, 기타 일반관리자
1 전문가			
11	과학전문가	수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지질학, 생물학, 의학, 농경학 및 경제학, 사회학 등을 연구하여 개념, 이론 및 운영방법을 개선, 개발하고 관련 과학지식을 응용한다.	자연과학 전문가, 생명과학전문가, 사회과학 전문가
12	컴퓨터관련 전문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인터넷관련 요소를 설계하고 관리체계의 운영을 개선, 유지한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멀티미디어 관련 자료를 제작한다.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네트워크관련 전문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전문가, 기타 컴퓨터관련 전문가
13	공학 전문가	건축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등 공학 분야를 연구하여 개념, 이론 및 운영방법을 개선, 개발하고 관련 과학지식을 응용한다.	건축 및 토목공학 전문가,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전문가, 화학 및 금속공학 전문가, 측량 전문가, 기타공학 전문가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14	보건의료전문가	환자의 진료 및 간호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적 장애, 정신질환 및 불안정 등의 장애를 치료하고 영양기법 및 응용에 관하여 연구, 개선 또는 개발한다.	의료진료 전문가(간호제외), 약사, 간호및조산 전문가, 치료전문가, 영양전문가
15	교육전문가	다양한 교육수준에서 학문에 대한 이론 및 실재를 가르치고 해당 학문 분야를 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 및 운영기법을 개선, 개발하고 강의안, 교재 등을 작성한다.	대학교수, 중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정규학교 이외 교육기관 전문가, 기타 교육 전문가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행정, 회계 및 재정분석, 인사 및 노사관계, 금융·보험, 판매 및 사업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하여 이에 대한 개념, 이론 및 운영방법을 개선, 개발하거나 관련 지식을 응용한다.	행정 전문가, 회계 관련 전문가,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금융·보험 전문가, 사업서비스 관련 전문가
1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법률문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거나 기소하며 판결선고를 한다. 또한 관련 수혜자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며 종교 의례와 의식을 거행하고,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한다.	법률 전문가, 사회서비스 전문가, 종교전문가
18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기록을 보관하며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및 기타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영화, 방송 및 연극에서 연기를 하거나 감독한다.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창작 및 공연 예술가,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21	과학관련 기술 종사자	수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지질학, 생물학, 의학, 농경학 및 사회과학 등에서 개념과 운영기법의 연구 및 응용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자연과학관련 기술 종사자, 생명과학 관련 기술 종사자, 사회과학관련 종사자
2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용자를 지원하고 컴퓨터와 주변장치를 통제 및 조작하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치, 유지, 보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컴퓨터관련 운영원, 컴퓨터 조작용, 산업용 로봇 조종원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23	공학관련 기술 종사자	건축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등 공학분야의 개념, 이론 및 운영방법에 대한 실제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며 기계장비의 통제 및 운용, 항공기 조종, 선박 운행과 제품의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한다.	건축및토목공학 기술종사자, 전기·전자및기계공학 기술종사자, 화학및금속공학 기술종사자, 제도기술종사자(캐드포함), 광학및전자장비 기술종사자, 선박·항공기 조종사 및 기술종사자, 안전및품질검사 종사자, 기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4	보건의료 준전문가	의료진료 전문가를 보조하여 제한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며 응급 구조에 따른 현장 또는 이송 중에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등 각종 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진료 준전문가, 의료기술 종사자, 안마사 및 전통의료 치료사
25	교육 준전문가	다양한 교육수준에서 정규교육 과정을 보조하고 실기를 지도한다	대학교육 조교 및 초·중등학교 보조교사,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 준전문가, 기타교육 준전문가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직업상담, 금융, 판매 및 상품증가에 관련된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보험 준전문가, 판매 준전문가, 상품증개 및 사업서비스 대리종사자
27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관련 수혜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도하는 자의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한다.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종교 준전문가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업소 등에서 음악, 무용 등을 공연 하고 운동경기에 참여하거나 경기 훈련을 지휘한다.	예술 및 연예관련 준전문가, 운동·경기 및 체력관련 준전문가, 기타예술·연예 및 경기준전문가
29	기타 준전문가	관리자의 지휘하에 단위의 장을 지원하며, 발률, 의료기록 등을 작성, 검토 하고 제한적인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관세, 조세, 사회보장에 관련된 승인신청을 허가하거나 검사한다.	관리 준전문가, 법률·의료 및 관련 사업 준전문가, 관세·조세 및 관련 정부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

31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사업체내 각종 문서 및 직원의 인사를 관리하고 관리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입안하며 홍보 및 판매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회계관련 업무 및 생산, 운송 등의 사무와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사무 종사자, 기획 및 홍보사무 종사자, 정부행정 사무 종사자, 판매 관련사무 종사자, 계수사무 종사자, 자재·생산 및 운송관련 사무 종사자, 사무지원 종사자,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
----	-------------	--	---

부호	중분류	내용 설명	예시
3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금전취급활동, 여행알선, 고객에 대한 안내 및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객과 직접 거래하고 전화 교환기를 조작한다.	대금수납 및 금전출납 사무 종사자, 안내 및 접수 사무 종사자,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41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어린이를 돌보고 가정 및 시설에서 보호업무에 종사하며 이·미용, 오락 및 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보호 및 관련종사자,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시중서비스 종사자, 장의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오락 및 여가서비스 종사자, 기타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42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각종 사업체, 시설, 가정, 선박 또는 여객열차에서 음식을 준비 및 조리하고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한다.	음식 조리 종사자, 음식서비스 관련 종사자
43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항공기, 열차, 선박, 버스 또는 기타 차량에 의한 여행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를 여행하는 개인 및 단체와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안내한다	운송수행 종사자, 여행안내 종사자
44	보안서비스 종사자	화재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법률과 규정을 이행토록 한다	경찰종사자, 소방및응급구조 종사자, 교도 및 보도 종사자, 기타 보안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51	도소매 판매 종사자	도·소매업체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체 및 가정을 방문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노점에서 판매하는 자도 포함	도매 판매 종사자,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 소매 방문판매 및 이동판매 종사자
52	통신 판매 종사자	전화주문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동전화 또는 호출 등의 통신설비를 판매하고 기간통신 사업체로부터 통신설비나 서비스를 사거나 임차하여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 통신서비스 및 통신 재판매 종사자
53	모델 및 홍보 종사자	상품을 광고하거나 예술작품을 위하여 일정한 자세를 취하고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한다	모델, 홍보 종사자

부호	중분류	내용설명	예시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업 숙련 종사자	정기적으로 전답작물, 과수작물을 재배·수확하고, 야생과일 및 식물을 채취한다. 또한 동물을 번식·사육하여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경지를 경작, 보존 및 개발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며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를 수렵한다.	전답작물 재배종사자, 과수작물 재배종사자, 정원사·육묘 및 버섯 재배종사자, 복합 및 시설작물 재배종사자, 동물사육 및 관련 종사자, 작물 및 동물 복합 생산자, 자급농업 종사자, 수렵업 종사자
62	임업 숙련 종사자	영림, 산림을 보존하는 일을 수행한다.	조림 및 영림 관련 종사자, 임산물 및 임업 식물관련 종사자, 목탄굽기원 및 관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 종사자	물고기 또는 기타 형태의 수생 동·식물을 번식 및 양식한다.	수생 동·식물 양식 종사자, 내륙 및 연안어업 종사자, 원양 어업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지하 또는 지표면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고형광물을 채굴, 채취하고 건축 및 기타 목적용 석재를 성형, 완성하며 건물 및 기타 구조물 등을 건설, 유지 또는 수리한다.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건물완성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금속주조, 용접, 단조 및 기타 방법으로 성형하고 중금속 구조물의 건립, 유지 및 수리를 한다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3	기계설비 및 정비 기능 종사자	기관, 차량, 전기 및 전자장비를 포함하여 기계설치, 유지 및 정비에 종사한다.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전자 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정밀기기, 악기, 목재, 섬유, 가죽과 관련 재료로 만든 수공예품을 포함하여 장신구, 귀금속제품, 자기, 도자기 및 유리제품 등의 각종 제품을 제조, 수리한다.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농업 및 수산업에서 생산된 원재료로 소비용의 식품과 각종 제품을 가공, 처리하고 목재, 섬유, 모피, 가죽 또는 기타 재료로 제조한 제품을 생산, 수리하는 자.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목재 처리·가구제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 기능 종사자, 펠트·가죽신발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부호	중분류	내용 설명	예시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한 지점 또는 원격조정을 통하여 자동화된 조립라인과 산업용 로봇을 포함하여 금속, 광물, 유리, 도기, 목재, 종이, 화학물 가공용 산업장치 또는 상하수 처리, 전력발전 및 기타 목적용 산업장치를 조작한다.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종사자, 유리가공장치·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 조작종사자
82	기계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한 지점에서 또는 원격조정을 통하여 산업용 기계를 조작한다.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조작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조작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조작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작종사자, 섬유·의복제품용 기계조작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조작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제조기계 조작종사자, 기타 기계조작 종사자
83	조립 종사자	엄격하게 설정된 절차에 따라 구성 부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을 조립한다.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및전자 장비 조립 종사자, 금속·목재 및 기타 제품 조립 종사자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열차,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동식 산업 및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 조작하며 선박에서 갑판일을 수행한다.	철도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91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청소, 경비, 계기 점검, 문서 송달, 상품 배달 및 수하물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사 및 관련보조원·청소 및 세탁 종사자, 건물관리·경비 및 관련종사자, 배달·운반 및 점검 관련종사자, 환경미화 및 관련종사자, 기타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거나 상당한 육체적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영농, 영림, 어업에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	농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임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어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제조업과 관련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품분류를 행하고 간단한 구성품을 수동 조립한다.	단순조립 노무종사자,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 기타 제조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부 호	중 분 류	내 용 설 명	예 시
94	광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거나 상당한 육체적 노동으로 광업, 건설 및 운수업과 관련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주로 수행한다.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운수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A 군인			
A1	군인	직업분류에서의 군인은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무복무 중인 사병은 제외하고 장교와 직업 군인인 하사관을 포괄한다.	장교, 장기 및 단기 하사관

5. 답례품 지급명부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
답례품 지급명부

()통계사무(출장)소
 ()조사구

지도담당자 : (인)
 조사담당자 : (인)

일련 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주 성명	지급일자	수령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련 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주 성명	지급일자	수령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6.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 조사표 작성현황표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
조 사 표 작 성 현 황 표

1) 사무(출장)소 총괄

()통계사무(출장)소

일련 번호	조사구 번호	총 가 구 수	적격		부적격	제출조사표수		보조조사표 작성가구수	비 고
			제출	미제출 (불응)		가구	개인		
1									
2									
3									
4									
.									
.									
계									

※ 추후 엑셀파일 제공 예정임

2) 조사담당자별 담당조사구 조사표 작성현황표

2000년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
조 사 표 작 성 현 황 표

(조사구 번호 :) 작성자()

일련 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 번호	가구 원수	15세이상 가구원수	작 성 합 계	조 사 가 구 용	표 수 개 인 용	불응가구 여부(○×)	부적격사유 (부호기입)	보조조사 유무(○,×)	비 고
1											
2											
3											
4											
5											
6											
7											
.											
.											
.											
26											
27											
28											
29											
30											
합계	-										

- 불응가구발생시 조사표 작성 필요 없음(불응가구이면 ×표기).
단, 개인용소득조사불응시는 조사표 첨부
- 불응가구유무, 부적격사유, 보조조사유무의 합계는 불응가구수(×), 부적격사유수, 보조조사가 된 가구(○)의 수를 기입
- 15세이상가구원수=작성조사표수합계=가구용조사표+개인용조사표,

7. 2000학년도 각급학교 납입금 징수액 현황(1인당 연액)

		국공립			사립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중학교							
특급지-서울시	최고	11,300	528,000	166,800	11,300	528,000	166,800
1급지-시지역	최고	13,000	502,800	163,200	13,000	502,800	163,200
	최저	11,200	455,600	128,400	11,200	455,600	128,400
2급지-읍지역(가)	최고	9,400	364,800	161,880	9,400	364,800	161,880
	최저	9,400	364,800	161,880	9,400	364,800	161,880
2급지-면지역(나)	최고	9,700	282,000	161,880	9,700	282,000	161,880
	최저	8,500	228,000	129,600	8,500	228,000	129,600
3급지-도서,벽지	최고	6,700	124,800	147,480	6,700	124,800	147,480
	최저	6,700	124,800	85,200	6,700	124,800	85,200
고등학교(비실업계)							
특급지-서울시	최고	13,700	1,004,400	222,000	13,700	1,004,400	222,000
1급지-시지역 (평준화지역)	최고	16,100	957,600	218,400	16,100	957,600	218,400
	최저	13,700	876,000	169,200	13,700	876,000	169,200
1급지-시지역 (비평준화지역)	최고	13,400	690,000	207,600	13,400	879,600	207,600
	최저	12,000	420,000	169,200	12,000	420,000	169,200
2급지-읍지역(가)	최고	13,000	703,200	218,400	13,000	801,600	218,400
	최저	11,100	612,000	169,200	11,100	612,000	169,200
2급지-면지역(나)	최고	12,600	632,400	218,400	12,600	777,600	218,400
	최저	10,800	542,400	169,200	10,800	542,400	169,200
3급지-도서,벽지	최고	11,200	475,200	215,280	11,200	580,800	215,280
	최저	10,000	434,400	139,200	10,000	434,400	139,200
고등학교(실업,상업계)							
특급지-서울시	최고	13,700	1,004,400	222,000	13,700	1,004,400	222,000
1급지-시지역 (평준화지역)	최고	16,100	957,600	218,400	16,100	957,600	218,400
	최저	13,700	876,000	169,200	13,700	860,400	169,200
1급지-시지역 (비평준화지역)	최고	13,400	504,630	207,600	13,400	754,800	207,600
	최저	12,000	382,800	169,200	12,000	385,200	169,200
2급지-읍지역(가)	최고	13,000	698,400	218,400	13,000	698,400	218,400
	최저	11,100	369,600	169,200	11,100	370,800	169,200
2급지-면지역(나)	최고	12,600	443,520	218,400	12,600	652,800	218,400
	최저	10,800	346,800	169,200	10,800	346,800	169,200
3급지-도서,벽지	최고	11,200	364,140	215,280	11,200	493,200	215,280
	최저	10,000	295,200	139,200	10,000	325,200	139,200

		국공립			사립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전문대학							
	최고	283,000	1,690,000	1,533,000	550,000	5,100,000	-
	최저	81,000	262,000	754,000	340,000	2,984,000	-
교육대학							
	최고	123,000	465,000	1,375,000	-	-	-
	최저	123,000	465,000	1,164,000	-	-	-
대학(교)							
인문·사회계	최고	315,000	1,526,000	1,632,000	1,052,000	4,547,000	-
	최저	15,000	128,000	1,255,400	123,000	600,000	-
이학·체육계	최고	315,000	1,740,000	5,498,500	582,000	5,264,000	-
	최저	15,000	128,000	1,286,000	330,000	2,046,000	-
공학·예능계	최고	315,000	1,920,000	2,562,200	1,008,000	6,094,500	-
	최저	15,000	128,000	1,286,000	123,000	2,302,300	-
의·치학계	최고	246,000	706,000	4,069,300	582,000	6,697,500	-
	최저	123,000	706,000	1,997,300	384,000	4,414,000	-
약학계	최고	246,000	592,000	3,099,500	582,000	6,328,000	-
	최저	123,000	592,000	1,833,800	384,000	4,357,000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교육통계연보」

8. 배기량별 자동차세

배기량별	제조사	차종	배기량	분기별 세금(원)	연간 세금(원)
800cc급	기아	비스토	798	41,490	82,980
	대우	마티즈	796	41,390	82,780
		티코	796	41,390	82,780
	현대	아토스	798	41,490	82,980
1,300cc급	기아	프라이드 왜건	1,323	120,390	240,780
		리오 1.3 SOHC	1,343	122,210	244,420
	현대	엑센트 1.3 SOHC	1,341	122,030	244,060
		베르나 1.3 SOHC	1,341	122,030	244,060
1,500cc급	기아	아벨라 1.5 SOHC	1,498	136,310	272,620
		스펙트라 1.5 DOHC	1,493	135,860	271,720
		리오 1.5 DOHC	1,493	135,860	271,720
		세피아 1.5 DOHC	1,498	136,310	272,620
		슈마 1.5 DOHC	1,498	136,310	272,620
	대우	라노스 1.5 DOHC	1,498	136,310	272,620
		누비라 1.5 DOHC	1,498	136,310	272,620
		스패건 1.5 DOHC	1,498	136,310	272,620
	현대	엑센트 1.5CS	1,495	136,040	272,080
		베르나 1.5 DOHC	1,495	136,040	272,080
		아반떼 1.5 DOHC	1,495	136,040	272,080
		아반떼XD 1.5 DOHC	1,495	136,040	272,080
		아반떼투어링 1.5 DOHC	1,495	136,040	272,080
1,800cc급	기아	세피아 1.8	1,793	233,090	466,180
		스펙트라 1.8DOHC	1,793	233,090	466,180
		크레도스 1.8	1,793	233,090	466,180
		엘란	1,793	233,090	466,180
	대우	스패건 1.8	1,799	233,870	467,740
		레간자 1.8	1,799	233,870	467,740
	현대	아반떼투어링 1.8	1,795	233,350	466,700
		티뷰론 1.8	1,795	233,350	466,700
		EF쏘나타 1.8	1,836	238,680	477,360

배기량별	제조사	차종	배기량	분기별 세금(원)	연간 세금(원)
2,000cc급	기아	크레도스 2.0	1,998	259,740	519,480
		옵티마 2.0	1,997	259,610	519,220
		포텐샤 2.0	1,998	259,740	519,480
		스포티지 그랜드 2.0	1,998	259,740	519,480
		레토나	1,998	259,740	519,480
	대우	레간자 2.0	1,997	259,610	519,220
		매그너스	1,998	259,740	519,480
		무쏘2000	1,998	259,740	519,480
	삼성	SM5 2.0	1,998	259,740	519,480
		티뷰론 2.0	1,975	256,750	513,500
	현대	쏘나타 2.0	1,997	259,610	519,220
		마르샤 2.0	1,997	259,610	519,220
		싼타모 6인승	1,997	259,610	519,220
2,000cc초과	기아	엔터프라이즈V6 3.0	2,954	422,420	844,840
		엔터프라이즈V6 3.6	3,605	515,510	1,031,020
	대우	뉴브로엄 2.2	2,198	314,310	628,620
		아카디아	3,206	458,450	916,900
		체어맨CM600	3,199	457,450	914,900
		코란도 290SL	2,874	410,980	821,960
		코란도 230S	2,299	328,750	657,500
		코란도 320LX	3,199	457,450	914,900
		무쏘 230S	2,299	328,750	657,500
		무쏘 290SL	2,874	410,980	821,960
		무쏘 320LX	3,199	457,450	914,900
	삼성	SM5 2.5	2,495	356,780	713,560
		EF쏘나타 2.5	2,493	356,490	712,980
	현대	마르샤 2.5	2,497	357,070	714,140
		그랜저XG 2.5	2,493	356,490	712,980
		그랜저XG 3.0	2,972	424,990	849,980
		다이너스티 2.5	2,497	357,070	714,140
		다이너스티V6 3000	2,972	424,990	849,980
		다이너스티V6 3500	3,496	499,920	999,840
		에쿠스 3.0	2,972	424,990	849,980
		에쿠스 3.5	3,497	500,070	1,000,140
		에쿠스 4.5	4,498	643,210	1,286,420
		갤로퍼 승용	2,476	354,060	708,120
		갤로퍼V6 GOLD	2,972	424,990	849,980

9.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급여 기준표

(상단 : 월 가구별 총 급여액(원))

(하단 : 월 개인별 급여액(원))

가구규모 소득등급 ¹⁾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24만원초과 ~ 상한	30,000 30,000	50,000 25,000	69,000 23,000	-	-	-
6	20만원초과 ~24만원이하	80,000 80,000	155,000 77,500	211,000 70,333	258,000 64,500	296,000 59,200	-
5	16만원초과 ~20만원이하	90,000 90,000	175,000 87,500	241,000 80,333	303,000 75,750	344,000 68,800	388,000 64,667
4	12만원초과 ~16만원이하	100,000 100,000	185,000 92,500	254,000 84,667	320,000 80,000	364,000 72,800	411,000 68,500
3	8만원초과 ~12만원이하	113,000 113,000	205,000 102,500	282,000 94,000	355,000 88,750	403,000 80,600	455,000 75,833
2	4만원초과 ~ 8만원이하	153,000 153,000	235,000 117,500	323,000 107,667	407,000 101,750	462,000 92,400	522,000 87,000
1	4만원이하	193,000 193,000	275,000 137,500	378,000 126,000	476,000 119,000	541,000 108,200	610,000 101,667
가구균등화 지수		0.634	1.000	1.375	1.730	1.967	2.220

주1) 가구원 1인당 월소득 기준

※ 7인이상 가구의 급여액은 6인가구 1인당 급여액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백원단위에서 반올림)

예) 1등급 7인가구(712,000원) = 101,667원 × 7인

1등급 8인가구(813,000원) = 101,667원 × 8인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2000생활보호사업안내서

10. 2000년도 1인당 국가유공자 보상금 월지급액표

(단위 : 천원)

대 상 별				기본연금	부가연금	계	
애국 지사	건국	국	훈장	1~3 등급	500	1,753	2,253
	건국	국	훈장	4 등급	500	695	1,195
	건국	국	훈장	5 등급	500	443	943
애지 유족	건국	국	훈장	1~3 등급	500	494	994
	건국	국	훈장	1~3 등급	500	359	859
	건국	국	훈장	4 등급	500	229	729
	건국	국	훈장	4 등급	500	212	712
	건국	국	훈장	5 등급	500	90	590
	건국	국	훈장	5 등급	500	78	578
상 이 군 경	1 급	1 항	60 세 이 상	만	500	682	1,182
			60 세 미 만		500	625	1,125
	1 급	2 항	60 세 이 상	만	500	641	1,141
			60 세 미 만		500	584	1,084
	1 급	3 항	60 세 이 상	만	500	597	1,097
			60 세 미 만		500	540	1,040
	2 급		60 세 이 상	만	500	477	977
			60 세 미 만		500	420	920
	3 급		60 세 이 상	만	500	417	917
			60 세 미 만		500	360	860
	4 급		60 세 이 상	만	500	276	776
			60 세 미 만		500	219	719
경	5 급		60 세 이 상	만	500	151	651
			60 세 미 만		500	94	594
	6 급	1 항	60 세 이 상	만	500	98	598
			60 세 미 만		500	41	541
	5 ~ 6 급		60세 이상 무의탁		500	171	671
	6 급	2 항	60 세 이 상	만	500	57	557
		60 세 미 만		500	-	500	
유 족	7 급		60세 이상 무의탁		150	171	321
			60 세 이 상	만	150	57	207
			60 세 미 만		150	-	150
	미 망 인		55세 이상 무의탁		500	191	691
			60 세 이 상	만	500	115	615
			일		500	20	520
부 모			60세 이상 무의탁		500	171	671
			독 자 사 망		500	105	605
			60 세 이 상		500	57	557
			2 인 전 사 반		1000	171	1,171
				500	-	500	
자 녀				500	105	605	
재 의 용 군 인	60세 이상 무의탁			500	171	671	
	60세 이 상			500	57	557	
	60세 미 만			500	-	500	
간 호 수 당				상이군경1급 : 1,250천원, 상이군경2급 : 400천원 가산			
전 상 부 가 연 금				10천원 가산			

자료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상과 예우」

11.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및 보험료

(단위:원)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월액	보험료		
	이상	미만		3.4%	사용자(1.7%)	가입자(1.7%)
1	0	300000	280000	9520	4760	4760
2	300000	410000	360000	12240	6120	6120
3	410000	520000	470000	15980	7990	7990
4	520000	630000	580000	19720	9860	9860
5	630000	750000	690000	23460	11730	11730
6	750000	870000	810000	27540	13770	13770
7	870000	1000000	940000	31960	15980	15980
8	1000000	1130000	1070000	36380	18190	18190
9	1130000	1260000	1200000	40800	20400	20400
10	1260000	1400000	1330000	45220	22610	22610
11	1400000	1540000	1470000	49980	24990	24990
12	1540000	1680000	1610000	54740	27370	27370
13	1680000	1830000	1760000	59840	29920	29920
14	1830000	1990000	1910000	64940	32470	32470
15	1990000	2150000	2070000	70380	35190	35190
16	2150000	2320000	2240000	76160	38080	38080
17	2320000	2490000	2410000	81940	40970	40970
18	2490000	2660000	2580000	87720	43860	43860
19	2660000	2840000	2750000	93500	46750	46750
20	2840000	3030000	2940000	99960	49980	49980
21	3030000	3220000	3130000	106420	53210	53210
22	3220000	3420000	3330000	113220	56610	56610
23	3420000	3630000	3530000	120020	60010	60010
24	3630000	3840000	3740000	127160	63580	63580
25	3840000	4060000	3950000	134300	67150	67150
26	4060000	4290000	4180000	142120	71060	71060
27	4290000	4520000	4410000	149940	74970	74970
28	4520000	4760000	4640000	157760	78880	78880
29	4760000	5010000	4890000	166260	83130	83130
30	5010000	5270000	5140000	174760	87380	87380
31	5270000	5530000	5400000	183600	91800	91800
32	5530000	5800000	5670000	192780	96390	96390
33	5800000	6080000	5940000	201960	100980	100980
34	6080000	6370000	6230000	211820	105910	105910
35	6370000	6670000	6520000	221680	110840	110840
36	6670000	6980000	6830000	232220	116110	116110
37	6980000	7300000	7140000	242760	121380	121380
38	7300000	7630000	7470000	253980	126990	126990
39	7630000	7970000	7800000	265200	132600	132600
40	7970000	8310000	8140000	276760	138380	138380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월액	보험료		
	이상	미만		3.4%	사용자(1.7%)	가입자(1.7%)
41	8310000	8680000	8500000	289000	144500	144500
42	8680000	9050000	8870000	301580	150790	150790
43	9050000	9430000	9240000	314160	157080	157080
44	9430000	9830000	9630000	327420	163710	163710
45	9830000	10230000	10030000	341020	170510	170510
46	10230000	10660000	10450000	355300	177650	177650
47	10660000	11090000	10880000	369920	184960	184960
48	11090000	11540000	11320000	384880	192440	192440
49	11540000	12000000	11770000	400180	200090	200090
50	12000000	12050000	12000000	408000	204000	204000
51	12050000	12150000	12100000	411400	205700	205700
52	12150000	12250000	12200000	414800	207400	207400
53	12250000	12350000	12300000	418200	209100	209100
54	12350000	12450000	12400000	421600	210800	210800
55	12450000	12550000	12500000	425000	212500	212500
56	12550000	12650000	12600000	428400	214200	214200
57	12650000	12750000	12700000	431800	215900	215900
58	12750000	12850000	12800000	435200	217600	217600
59	12850000	12950000	12900000	438600	219300	219300
60	12950000	13050000	13000000	442000	221000	221000
61	13050000	13150000	13100000	445400	222700	222700
62	13150000	13250000	13200000	448800	224400	224400
63	13250000	13350000	13300000	452200	226100	226100
64	13350000	13450000	13400000	455600	227800	227800
65	13450000	13550000	13500000	459000	229500	229500
66	13550000	13650000	13600000	462400	231200	231200
67	13650000	13750000	13700000	465800	232900	232900
68	13750000	13850000	13800000	469200	234600	234600
69	13850000	13950000	13900000	472600	236300	236300
70	13950000	14050000	14000000	476000	238000	238000
71	14050000	14150000	14100000	479400	239700	239700
72	14150000	14250000	14200000	482800	241400	241400
73	14250000	14350000	14300000	486200	243100	243100
74	14350000	14450000	14400000	489600	244800	244800
75	14450000	14550000	14500000	493000	246500	246500
76	14550000	14650000	14600000	496400	248200	248200
77	14650000	14750000	14700000	499800	249900	249900
78	14750000	14850000	14800000	503200	251600	251600
79	14850000	14950000	14900000	506600	253300	253300
80	14950000	15050000	15000000	510000	255000	255000
81	15050000	15150000	15100000	513400	256700	256700
82	15150000	15250000	15200000	516800	258400	258400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월액	보험료		
	이상	미만		3.4%	사용자(1.7%)	가입자(1.7%)
83	15250000	15350000	15300000	520200	260100	260100
84	15350000	15450000	15400000	523600	261800	261800
85	15450000	15550000	15500000	527000	263500	263500
86	15550000	15650000	15600000	530400	265200	265200
87	15650000	15750000	15700000	533800	266900	266900
88	15750000	15850000	15800000	537200	268600	268600
89	15850000	15950000	15900000	540600	270300	270300
90	15950000	16050000	16000000	544000	272000	272000
91	16050000	16150000	16100000	547400	273700	273700
92	16150000	16250000	16200000	550800	275400	275400
93	16250000	16350000	16300000	554200	277100	277100
94	16350000	16450000	16400000	557600	278800	278800
95	16450000	16550000	16500000	561000	280500	280500
96	16550000	16650000	16600000	564400	282200	282200
97	16650000	16750000	16700000	567800	283900	283900
98	16750000	16850000	16800000	571200	285600	285600
99	16850000	16950000	16900000	574600	287300	287300
100	16950000	17050000	17000000	578000	289000	289000
101	17050000이상		만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			

* 직장가입자가 2 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

12. 고용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일괄납부하되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부담함.

< 보험료의 산정 및 부담내용 >

사업별	보험료 산정내용	부담내용
실업급여	피보험자(일용근로자제외)임금 총액×보험료율	노사 각 1/2씩 부담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액부담
고용안정사업	피보험자(일용근로자포함)임금 총액×보험료율	사업주가 전액 부담
능력개발사업		

< 보험료율 >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5%	0.5%
고용안정			0.3%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0.1%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3%
	150인~1000인미만 기업		0.5%
	1000인이상 기업		0.7%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의 규모(상시근로자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에 따른 차등보험료율임.

●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

-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연도 중에 지급 받는 금품중에서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 받은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 또는 지급 받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환가가 가능하다면 임금에 포함됨